



August 2009 _ VOL . 397

발명특허

8

INVENTION & PATENT

포커스 _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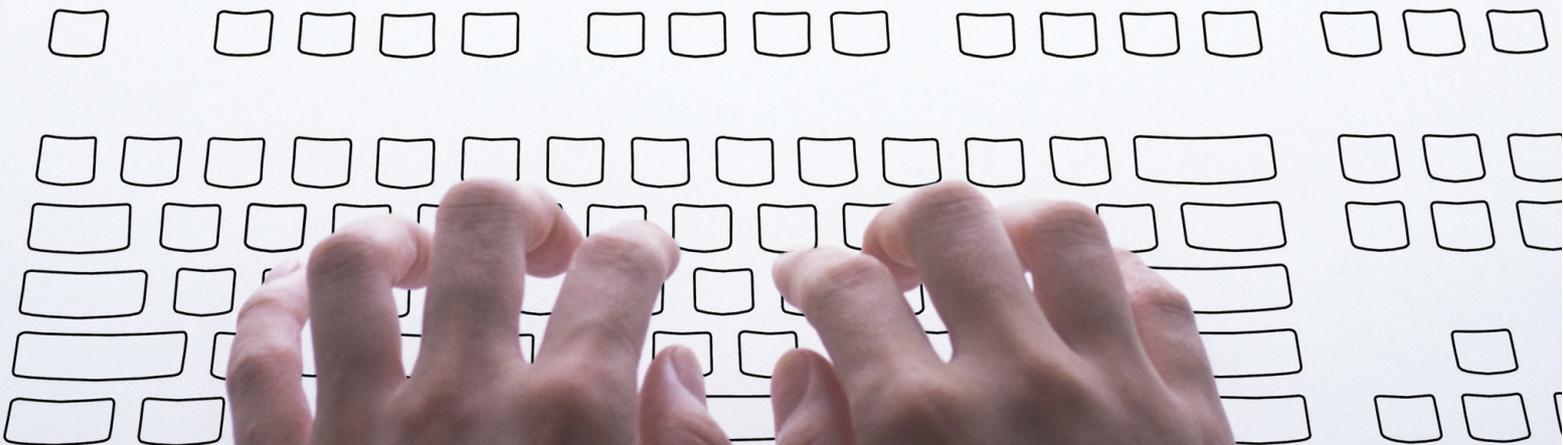
지식재산경영사례 _ Fusion Systems Corporation in Japan

한국여성발명협회 - Zoom in _ 생활발명운동 확산과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특허 에세이 _ 1등만 의미 있는 특허

해피 CEO 인터뷰 _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발명칼럼 _ 정보통신 先導國,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IP Report

- 12 포커스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 19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20 지식재산경영사례
Fusion Systems Corporation in Japan

IP Column

- 24 한국여성발명협회 - Zoom in
생활발명운동 확산과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 28 특허 에세이 1등만 의미 있는 특허
- 30 해피 CEO 인터뷰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 33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4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진매트릭스
- 39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40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이엑스티주식회사
- 47 발명칼럼 정보통신 先導國,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 50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IP Information

- 70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 72 건강하게 삽시다
담배회사의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IP News

- 76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 84 즐거운 퍼즐
- 87 문화산책
- 88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89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 91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9년 8월호 제 34권 제 8호(통권397호)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우 135-980)
전 화 02)3459-2800(대)
인 쇄 2009년 8월 3일
발 행 2009년 8월 5일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깜찍여우 님의 말: 넌 휴가 얼마 동안이야??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앞뒤로 주말까지 붙이면 9일이지~ ㅋㅋㅋ
 깜찍여우 님의 말: 우왕~~ 좋겠다~~ 부럽삼~!—T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근데...
 깜찍여우 님의 말: 근데???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자잘하게 준비할게 많넝... 쫘...
 깜찍여우 님의 말: 아~~ 난 또 뭐라공~ ^^ㅋ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잉?? 넌 걱정없나보네~~
 깜찍여우 님의 말: 그럼~~ 바이인벤션이면 걱정 끝이거든~
 ㅎㅎㅎ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바이인벤션???
 깜찍여우 님의 말: **www.buyinvention.com** 여기
 한번 들어가봐~ 단번에 해결될꺼야! ^^ㅋ
 아싸~ 여름이다! 님의 말: 오케~ 고마워~ ^0^

인터넷 주소창에 **바이인벤션** 을 쳐보세요.

2009 제7회 여성발명 경진대회

생활 속 참신한 발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성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발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2009 제7회 여성발명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자신만의 소중한 발명아이디어가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발하고 실용적인 생활발명품의 산실이 되어 온 「여성발명경진대회」에서 자신의 발명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참가부문 및 자격

- 일반부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해외 주재 교포 포함)
- 학생부 :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 중인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출품대상 및 참가제한

- 신청일 현재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아이디어(출원 중인 경우는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는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전의 고안에 한함
- 1인1건에 한하고, 공동발명의 경우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발명관련기관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

접수기간

- 2009년 8월 1일~9월 10일

제출서류

- 신청서, 발명내용, 요약서, 설명서(이상 지정양식), 기타 참고자료
- 재학·휴학증명서(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주최/주관기관은 수상작에 대한 간행물을 발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신청방법

- 이메일 : kwia01@inventor.or.kr
- 우 편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재산지식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방 문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출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약5분 거리)

참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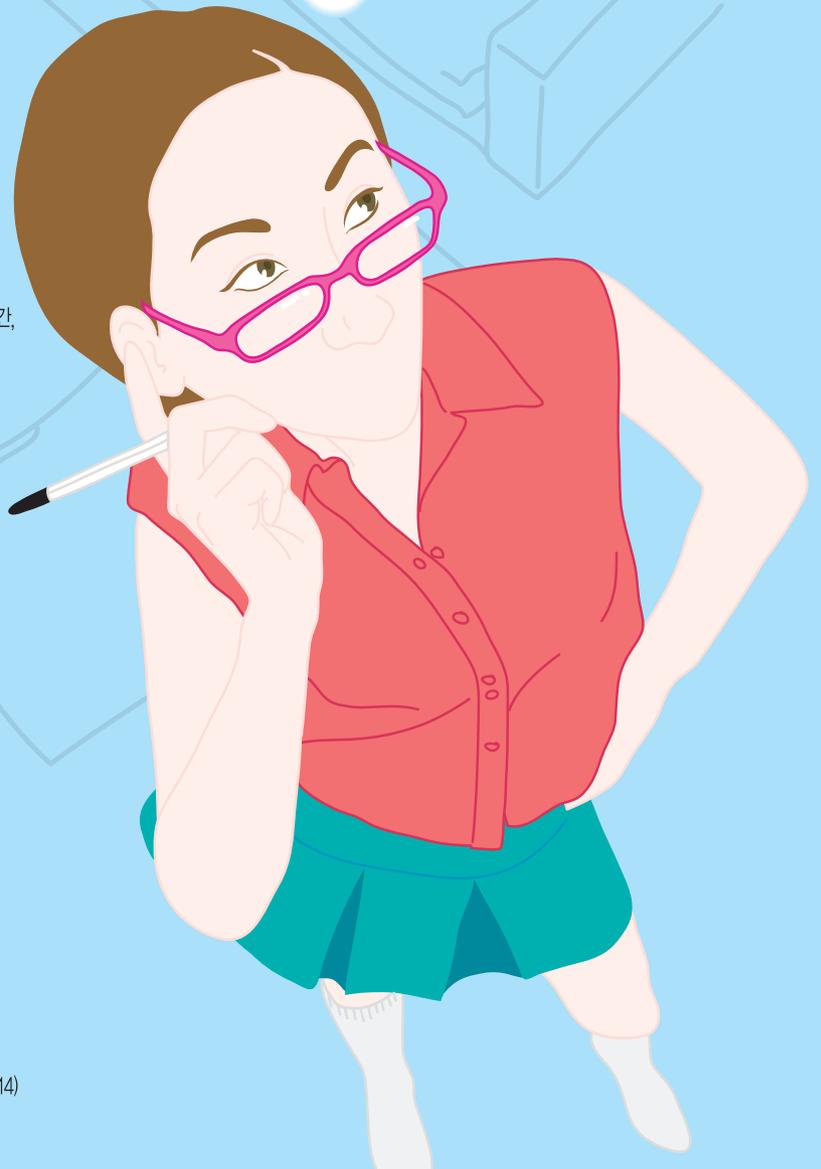
- 참가비 : 1만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49401-04-159671/(사)한국여성발명협회
※ 학생, 장애인, 회원은 무료

시상계획

- 대 상 (대통령상/1인) : 트로피, 상금400만원
- 준대상 (국무총리상/1인) : 상패, 상금300만원
- 금 상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장관상/3인) : 상패, 상금200만원
- 은 상 (특허청장상/6인) : 상패, 상금100만원
- 동 상 (주관 및 후원기관장상/20인) : 상금30만원
- 장려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20인) : 상품권
※ 시상인원은 참가 건수 및 수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

시상식

-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예정)
- 문 의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전화 02-538-2710, 팩스 02-538-2714)



주최 :



주관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예정)



특허정보조사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기술개발의 첫걸음입니다!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

| 특허맵(Patent Map)서비스 |

특허정보에 포함되어진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 → 분석 → 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기술의 발전추이, 미래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특허(IP)컨설팅 / 교육지원 |

특허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I의 전문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교육지원



신청
상담
안내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유현주 02-6915-6114

일 반 상 담 : 원태희 02-6915-6623

팩 스 : 02-6915-6630

특허맵 서비스/특허컨설팅/교육지원

신청 및 상담 : 배경완 02-6915-6604

<http://www.forx.or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한국특허정보원

전화 : 02-6915-6000 / 팩스 : 02-6915-6009 / 고객센터만 신고전화 : 080-012-7700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 특허정보조사서비스 : www.forx.org

지식재산교육의 모든것! **NEW** 이 사이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연구원

연구방향설정
중복연구방지를위한
특허정보검색, 활용
온라인교육시스템제공

중소기업

특허출원서작성
및 전자출원 등
실무교육
맞춤제공

초·중·고등학생

창의력 증진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대학생

전공별 다양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제공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일반인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온라인콘텐츠
무료제공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이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던 발명, 지적권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사이버국특허아카데미, 사이버발명교육연수원, 발명교육센터 등 교육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원클릭으로 온라인교육, 교육정보, 커뮤니티, E토론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생의 편의를 강화한 포털사이트

기업 (중, 소, 대기업)

기업별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 ·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가능

연구기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개설, 운영

일반인

발명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위한
e-러닝 무료교육

청소년

발명의 원리, 아이디어발상
창의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발명교육

대학생

이공계, 디자인, 예비교원 등
예비지재권전문가를 위한
맞춤 교육

발명교사

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주)마크프로

"특허청 해외 국유 특허권 갱신 및 관리기관 지정"
업계 최초로 최고배상액 100억원 전문인 배상보험 가입

세계 최대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영국의 CPA社와의 Partnership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갱신 관리

"고객의 특허현황을 한 곳에서"
온라인 특허검색 서비스 "MP Direct" 제공
MP Direct Web Service 제공
권리포기예정특허 기술이전 마케팅 서비스 제공

국내 및 해외 기술조사/기술분석

선행기술조사, 무효자료조사
기술성 · 사업성 평가, 특허침해분석

국내 및 해외 기술거래/기술사업화

기술거래 및 기술의 사업화
<http://ttms.kr>

상표 검색 DB "MarkSearch"

기존상품 DB와 차별화된 콘텐츠, 진보된 사용자 편의성 제공
국내 최고의 기업과 다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채택 사용중

상표권 갱신 DATA 관리

영국 CPA社와 업무협약체결로
효율적인 상표권 갱신 관리 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의 상표조사전문회사인
Thomson CompuMark社와 업무협약체결

해외상표조사 Online Service Platform인 "SAEGIS"에
국내상표에 대한 영문변환데이터 공급
"SAEGIS"에 대한 국내 Sales Representative

영국 CPA社와 업무제휴를 통한
중국, 대만의 지적재산권 관리

중국의 Sunhope, 대만의 AIPO와의
Partnership을 통한
중국, 대만 지적재산권 공동관리

MA R KPRO

(주)마크프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3층
TEL 02-785-3040~2 FAX 02-785-3043 E-mail markpro@markpro.com

www.markpro.com



Registered ISO 9001:2000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보증지원안내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 간에 체결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정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도]

사업화자금 보증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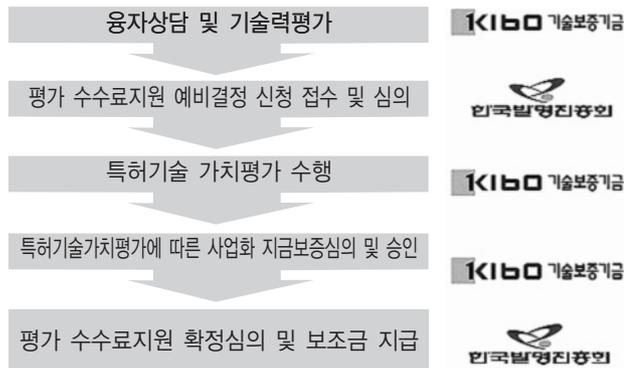
[취급점 및 보증상대처]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서초, 인천, 수원, 화성, 부천, 천안, 원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안산, 창원)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신청접수]

신청 접수는 연간수시(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대표전화 051-460-2466(<http://www.kibo.or.kr>)
-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 02-3459-2884, 2885, 2890 (팩스 : 02-3459-2899)
-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발명의 평가지원)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지역별 영업점 검색” 참조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신청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발명과 기술입국을 위해 우수 특허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 우수 발명품의 전시·홍보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여 범국민적인 발명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200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을 개최합니다.

1. 행사개요

- 전시기간 : 2009. 12. 3(목) ~ 12. 7(월)
- 장 소 : COEX 태평양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시행기관
 - 주최/주관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경제4단체,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학교발명협회

2. 출품물 모집(신청) 대상

- 일반전시코너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 또는 등록권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
 - 출품물 : 출품인 1명(사)당 발명품 3점 이내 신청가능
- 특별전시코너 : 09년도 국고보조지원 시작품 선정품, 09년도 국제발명품전시회 수상품, 09년도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수상품, 09년도 특허기술상 수상품

3. 시상계획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WIPO사무총장상 등 142점(예상)

4. 전시회 참가비

- 전시부스료 : 무료
- 출 품 료 : 55만 원 (전시품으로 선정된 업체 및 개인에 한하여 추후 납부)
 - ※ 단, 추가부스 신청 시 부스료 납부

5. 부스제공

전시대상으로 선정 시 1부스(3m×3m×2.4m) 무료제공

6. 신청안내

- 접수기한 : 2009. 8월 중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 전시행사 사업공고)에서 다운가능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T.(02)3459-2793 F.(02)3459-279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안내 및 신청서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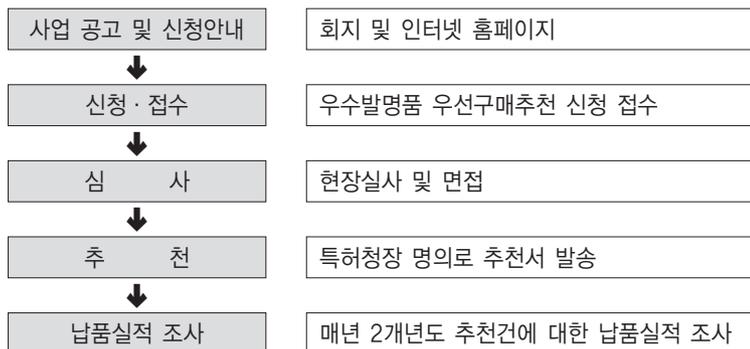
2. 신청 자격

- 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1999. 7. 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3.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 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절차



다. 심사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파급성, 차별성
- 구매효과성 : 대체우위성, 가격경쟁력,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신청권리대비 제품의 연관성 등

5. 선정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면제

6.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접수기간 : 2009년 3차 8월 26일까지(연중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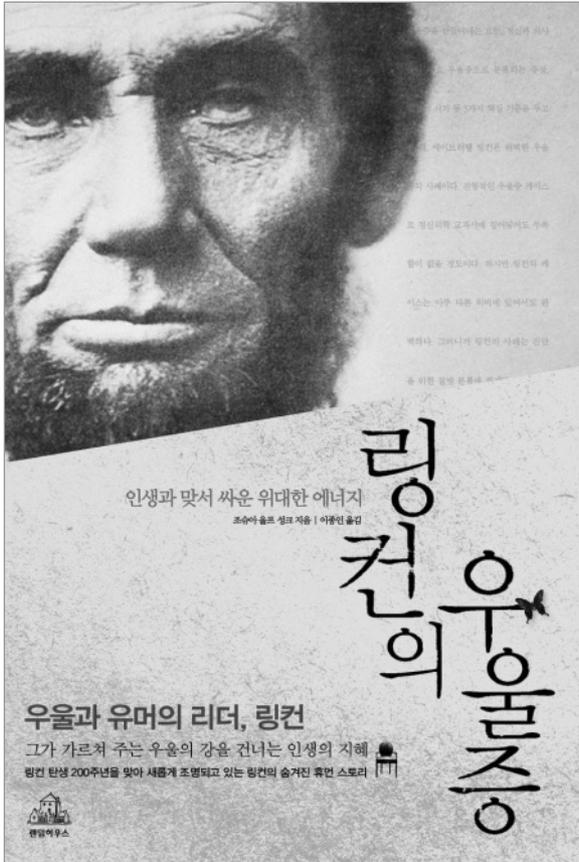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고객지원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 전화 : 02-3459-2864, 팩스 : 02-3459-2879

○ e-mail : faney@kipa.org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의 우울증

저자 조슈아 울프 섹크 | 역자 이종인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책소개

우울과 유머의 리더, 링컨
그가 가르쳐 주는 우울의 강을 건너는 인생의 지혜~

『링컨의 우울증 | 역사를 바꾼 유머와 우울』, 노예해방을 외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워간 링컨, 그가 태어난지 벌써 200주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링컨의 이면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책은 7년간에 걸친 저자의 연구 조사 활동과 기타 저명한 링컨 연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아우르고 있다.

저자 섹크는 링컨 대통령이 우울증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우울증이 링컨의 인생에서 어떤 이유로 생겨났으며,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의 인품과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쓴 역사 심리서이다.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하며 위대한 사업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선명하게 묘사한다.

링컨의 우울증과 관련하여 3가지 중요한 질문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심도 있게 접근해 본다. 1부에서는 링컨의 우울증이 발병한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이 현대 정신의학의 진단 카테고리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링컨이 자신의 우울증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알아보고, 3부에서는 링컨의 우울증이 그의 원숙한 성품, 사상, 행동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소개한다.

포커스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19

지식재산경영사례

Fusion Systems Corporation in Japan

20

IP Report



송한복

현) 엘지전자 특허그룹장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사)
 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전 한국지적재산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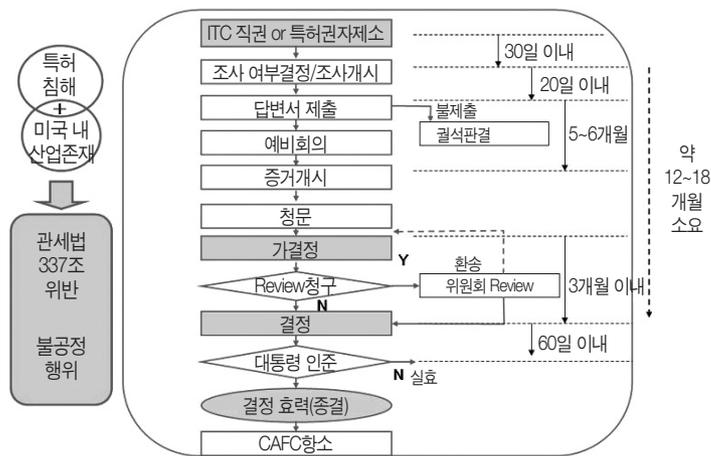


미국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무역구제제도를 중심으로)

2. ITC 조사 절차

〈그림 6. 미국 ITC의 조사절차 흐름도〉²⁸⁾



28) 국제특허분쟁대응표준 Manual, 앞의 자료, 258면

(1) 조사여부의 결정

ITC Section 337조에 근거한 조사 절차는 제소장(Complaint)의 접수 또는 ITC 직권으로 시작된다. (19 U.S.C. 1337 (b)(1)) 조사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바로 조사가 개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개시전 절차(Preinstitution proceedings, C.F.R. 210. 8.)가 진행되고 조사개시 전 절차의 결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는 것이다.

Complaint에는 Section 337조의 실제적 요건을 위법한 수입이란 점과 그 행위에 의한 미국 산업의 영향 두 가지를 만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한다. Complaint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조사개시 결정통지(Notice of Investigation)가 연방공보에 공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고 공시일이 조사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19 C.F.R 210. 10)

(2) 답변서 제출(Answer to Complaint)

제소장과 조사개시 통지는 피소인에게 송달되며 피소인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C.F.R 210. 13(a))

답변서 제출 후 당사자와 담당 행정 판사(ALJ)가 모여 일정, 증거개시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예비회의(Preliminary Conference)가 진행되며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일정을 요약 기재한 명령(Post Preliminary Conference)이 통상 나온다. (19 C.F.R 201. 35)

조사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행정판사(ADJ)는 조사 완료의 목표일을 결정해야하며 조사기간은 보통 1년에서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내부적으로는 15개월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²⁹⁾

(3) 증거의 개시 (Discovery)

일반 지방법원의 증거개시 규정과 동일하며 당사자는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증언녹취(Deposition), 질문장 (Interrogatories), 사실관계의 진정성 인정요청(request for admissions)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9 C.F.R 210. 27-31)

Discovery중 기업비밀이 포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

방은 변호사에 한정해서 공개할 수 있다. (19 C.F.R 210. 34)

(4) 청문 (Hearing)

Hearing 전에 쟁점의 단순화를 위한 청문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가 열리며 쟁점의 정리, 제출한 증거의 정리, 제출될 증인의 확정 등이 행해지며 Hearing은 법원의 공판(Trial)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공개이나 ALJ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Hearing에서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심문 및 반대심문하고, 이의신청 또는 변론을 행한다. (19 C.F.R 210. 36-38)

(5) 가결정 / 예비판정 (Initial Determination)

Hearing 절차를 마치면 주심 ALJ은 증거를 바탕으로 가결정(예비판정)을 내린다.

Initial Determination은 조사완료 목표일이 조사 개시 후 15개월 미만일 경우는 목표일 3개월 전, 그 이상일 경우는 목표일 4개월 전에 ITC에 제출 되어야 한다. (19 C.F.R 210. 42(a)(1))

Initial Determination은 일반적으로 Section 337조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 법률 판단 의견 및 “어느 당사자가 ALJ의 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ITC의 직권으로 심사를 명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C.F.R 210. 42(d)).

ALJ는 예비판정 발표 후 14일 이내에 ITC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권고 결정(Recommended determination)을 하여야 하고, Recommended determination에는 적절한 구제조치와 피 신청인의 대통령 심사 기간 중 공탁할 담보 금액이 포함된다. 예비판정은 예비판정 송달 후 45일 이내에 ITC에서 심사 또는 예비판정의 효력일자 변경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된다. (19 C.F.R 210. 42(h))

(6) 심사의 결정 (Determination)

Determination은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복잡한 사건의 경우 18개월 정도 소요되며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경

29) Sidley, 앞의 자료, 10면

우 적절한 구제 수단을 내용으로 명령을 내린다. 결정의 유형에는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그리고 양자를 조합한 명령 및 압류가 있다. (19 U.S.C. 1337 (d),(i))

구제 명령이 미 확정적인 기간(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대통령에 의한 승인, 거부권행사 또는 60일의 심리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동안은 명령을 받은 자는 보증금(Bond)을 내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 Bond는 통상 수입품의 외국 항에서의 출하가격(F.O.B)에 대한 비율로 정하여 진다. (19 U.S.C. 1337 (e)(2)(4))

ITC의 Section 337 절차 진행 중 미국 국내산업이 받을 손해가 심각하고, 구제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배제 명령과 중지 명령을 단독 혹은 병존하여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잠정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라 한다. (19 U.S.C. 1337 (e),(f))

ITC의 Section 337 절차 자체가 일반 법원의 절차 대비 신속한 절차이므로 더욱 단축하는 Temporary Relief는 ITC의 예외 조치로 인정된 사례도 극히 한정적이다.³⁰⁾

(7) 대통령 인준 (Presidential review)

ITC가 Section 337의 위반 또는 위반이라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동 결정을 연방공보에 공표하고 결정문과 해당조치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9 U.S.C. 1337 (j),(1))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 후 60일 이내에 동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U.S.C. 1337 (j),(2))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ITC 결정과 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60일 기간이 도래한 때 최종 결정이 확정된다. (19 U.S.C. 1337 (j),(4))

(8) ITC 결정에 대한 불복

ITC 최종결정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연방 항소법원 (CAFC)에 항소할 수 있다. ITC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는 가. ITC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나. 예측불가능 했거나, 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라.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거나, 마. 기타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았거나, 바. 기록상의 주요 증거를 따르지 않고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로 제한된다.

3. ITC 제소 사례 분석

(1) Hazani(미) vs. 삼성전자 등 사례³¹⁾

미국의 Hazani는 64메가 D램 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에 D램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들(미쓰비시, NEC, OKI등)을 상대로 1995년 ITC에 제소하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특허침해를 부인하고 Hazani의 특허는 특허존속기간이 끝난 선행기술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하였다.

ITC는 약식결정명령(Summary Determination Order)의 형태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1996년 4월), 이에 불복하여 Hazani는 ITC를 피고로 CAFC에 항소(Appeal)하였으나, 삼성 등은 소송참가인이 되어 재판에 참가, CAFC 또한 상기 특허의 침해를 부정하였다. (1997년) Hazani는 CAFC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Trial을 신청하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연방대법원에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을 요청하나 역시 거부되어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시사하는 바는 한국업체로서 ITC에서 최초로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ITC 조사과정에서 삼성전자 등은 특허무효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Hazani는 기간 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CAFC에서 자신의 권리가 포기되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삼성을 비롯한 피고들이 약식결정을 행정관사(ALJ)에게 요청했을 때, Hazani는 이에 대응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다가 약식결정이 피고들에게 결정된 다음 바로 제3의 전문가 증언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30) Sidley Seminar questions and answers, 상표침해로 인한 Temporary Relief 결정 몇 차례 있으나 특허 침해로 인한 Temporary Relief 결정은 거의 없었다.

31)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앞의 자료, 32면

못했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증거로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 사례로 미루어 볼 때, ITC조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ITC에 제소 당했을 때 ITC 조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시간제약의 엄격성을 이해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내대응조직의 구성으로 제한된 기간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삼성전자 vs. Fujitsu 사례³²⁾

삼성전자가 일본 Fujitsu를 상대로 반도체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1997.11.10 ITC에 제소한 사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소송이 종료되었다. 이 사례는 한국기업이 제소한 사례로, Section 337 법률 문헌의 국내산(Domestic industry)은 기업의 국적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상당액의 투자와 상당수의 고용 등 실질적인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이 사례와 같이 제소인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이 외국기업이 제소인이 된 사례는 급증하는 특허분쟁사례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 ITC 통계자료를 볼 때 34%³³⁾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경우도 미국 내 R&D투자가 있는 경우 후발 업체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ITC소송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Genesis vs. Mstar 사례

본 사건은 TV 및 Monitor 제품의 핵심 부품인 Scaler Chip 선발업체인 미국의 Genesis사가 대만의 후발 경쟁업체를 상대로 ITC 제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특허권자는 후발 Chip Maker의 특허 침해 부품을 사용하는 Set Maker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하여 미국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Investigation title에 표의 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사건은 피고가 추가된 제소시점이 다른 2사건이 병합에 되어 처리된 case이다.

표 4를 부연설명하면 2002.10월 최초 ITC 제소시 일부 회사는 Settle하였고 2003.4월 또 다른 특허로 추가 제소하였고 Mstar는 2003.6월 ITC에 제소되었다. 2003.6월 1st ID에서 MRT, Trumpion사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으며 Genesis사는 Review를 청구하게 된다. 반면 2004.4월 1st ID에서 MRT, Trumpion사는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MRT, Trumpion사가 Review를 청구하게 된다.

〈표 4. Genesis vs Mstar ITC 사건개요〉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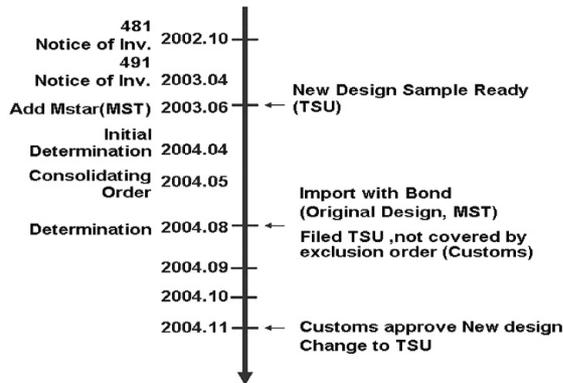
Investigation No.	337-TA-481	337-TA-491
Respondent	MRT, TRUMPION, SmartASIC	MRT, Trumpion, MStar
대상특허	'867	'361, '074, '922, '867
조사개시	Oct., 2002	Mar., 2003
ID	1st ID : Oct. 17, 2003 2st ID : May 20, 2004	Apr. 14, 2004
Consolidating	May 21	
Determination	Aug. 20, 2004	

2004. 5월 2nd ID에 MRT, Trumpion사는 1st ID와 반대로 Genesis사의 특허를 침해 결정이 있었으며 MRT, Trumpion사의 Review 청구에도 불구하고 MRT, Trumpion사와 Mstar 모두 Genesis의 특허를 침해하므로 수입배제 명령이 내려졌으며 60일내 대통령 결정일 2004. 10월까지 보증금 대당 \$1을 내고 한시적으로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ITC의 특허 침해 및 수입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Mstar사는 특허 침해결정이 내려진 MST Chip을 대신하여 회피품인 TSU Chip을 적용하고 MST Chip의 적용이 불가피한 모델에 대해서만 Bond를 내었다.

Mstar사는 TSU Chip을 적용한 일부 모델에 대하여 Set Maker를 통하여 특허 실시권 허여 계약을 추진하고 회피 설계한 TSU Chip은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에 cover되지 않는다고 세관 설득에 주력하면서 C.A.F.C에 항소를 하였다. 세관은 TSU Chip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도하여 통관저지를 막을 수 있었다.

32)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앞의 자료, 33면
33) Sidley Austin LLP Seminar Materials, The U.S ITC, (2006) 9면
34) 고명화, 미국 ITC 제소 대응전략 Seminar Materials, (2006) 15면

〈표5 Mstar사의 Design Around〉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C결정은 짧은 기간이 지난 후 피제조사 패소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제특허를 논의의 여지없이 회피하는 Design Around(회피설계)는 제조자와의 화해를 추진하고 협상에서 주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책 마련에 조기 집중이 필요하다.

4. ITC 대응전략

(1) ITC와 연방 지방법원 제소

특허침해분쟁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각 절차의 법적요건을 갖추는 한 특허침해 혐의자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과 ITC에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제소할 수 있다.³⁵⁾

ITC 절차와 연방지방법원의 절차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가. 구제요건상의 차이

특허권자가 ITC 조사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침해 외에도 경제문제에 관한 요건으로서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확립과정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과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공익성도 고려할 것을 요한다.

나. 관할권의 차이

ITC가 특허권 침해영역에 있어 Section 337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효력을 먼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

〈표 3 ITC v. The Federal Court〉³⁶⁾

항목	ITC	The Federal Court
구제요건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 외에 미국 국내산업의 존재 및 공익성 고려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
구제내용	세관에서 일반적 또는 제한적 수입금지, 피제소인에 대한 침해중지명령, 압류 등. 단, 손해배상은 불가	피고에 대한 금지처분, 손해배상
사법관할권 및 관할법정	위싱턴DC에 위치하는 ITC가 모든 수입 품에 대해 전국 관할권을 행사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권 및 적정관할법을 필요로 함.
판단자	ALJ 및 ITC위원	판사 또는 배심원
기간 제한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내, (통상 12-18개월 소요)	절차기간의 제한이 없다.

에 특허 침해 분쟁에 있어서 사실상 ITC와 연방지방법원 둘 다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방지방법원의 대인관할권 인정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그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반면, ITC절차에서는 대물관할권만 있으면 되므로, 결국 특허침해소송에서 ITC는 지방법원이 가지지 못하는 “전국적” 사법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³⁷⁾

다. 절차상의 차이

ITC 절차는 ALJ에 의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많은 규정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사용되는 절차규정과 유사하며 기간상의 차이점은 Section 337 절차의 조사기간은 실제로 가장 이른 기간(Earliest Practicable Time)내에 종료한다는 제한 하에 통상 1년에서 18개월이 소요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30여 개월 소요된다.³⁸⁾

라. 구제조치상의 차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ITC는 특허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은 이를 할 수 없으며 반면 지방법원은 ITC에서 결정할 수 없는 손해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2) ITC 절차의 이점 고찰

가. 제조자의 이점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대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ITC의 경우는 관할권과 집행에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 시 ITC는 매력적인

35)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4면

36)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4면

법정이 된다.³⁹⁾

또한, ITC Section 337 조사절차는 가능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진행이 빠르고 ALJ의 소송 지휘도 엄격하다. 이런 점은 비교적 충분히 사전준비를 갖춘 제소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의 유효성이나 특허 침해의 인정에 있어서 ITC는 일반 법원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⁴⁰⁾

나. 피소자의 이점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외국기업에 편견을 가짐으로써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ITC 절차에서는 전문적인 소양과 비교적 경험이 많은 행정판사에 의해 사실심이 이루어지므로 외국기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피소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으며, 통상 30개월 이상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연방법원의 소송에 비교하여 신속하게 종결되는 ITC절차가 소송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피소자에게 장점이 있다.⁴¹⁾

참고로 ITC 소송비용은 평균적으로 \$4M 정도가 들고, 법원의 경우 해당 Case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판 진입까지 2내지 4년이 걸리고 매년 \$1M 이상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간에 쫓기고 많은 브리핑과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여 Case준비를 위한 규모가 큰 조직이 필요하지만 지방 법원 대비 비용은 적게 든다고 볼 수 있다.⁴²⁾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C와 법원 하나만 선택적으로 제소한다면 비용 측면 피소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병행하여 제소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다.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 ITC 결정

법원의 결정이 ITC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 법원에서 먼저 비침해 또는 무효 결정을 하였을 경우, ITC 제소할 수 있는지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Final 결정은 ITC Case에 보조적인 Estoppel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라면 보조적인 Estoppel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강요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해 ALJ는 크게 설득될 수 있다.

반대로 ITC가 특정 특허에 대하여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ITC의 최종 결정은 지방법원의 소송에 법률적으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ITC에서 패한 특허권자가 똑같은 특허와 동일 피고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다수 있다. 물론 지방 판사와 배심원은 ITC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⁴³⁾

(3) ITC제소 대응전략

ITC 조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ITC 조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시간제약의 엄격성, 방대한 자료 및 막대한 경비를 생각할 때 분쟁경험이 많은 사내 대응 조직의 구성과 ITC 분쟁을 경험한 유능한 미국변호사 선임과 ITC제소로부터 청문까지, 즉 행정판사의 가결정 이전까지의 초기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ITC의 Section 337조사절차는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조사개시결정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12개월(복잡한 사건의 경우 18개월까지 연장가능)이내에 ITC 최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법정기간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한 이러한 짧은 기간의 조사절차가 피제소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1989년 GATT 패널의 판정이 있던 후, 1994년 개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가장 이른 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연방법원에서의 재판절차보다는 절차의 신속이 강조되고 행정판사에 의한 소송 진행도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는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있어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 되고 있다.

37)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5면

38)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6면

39)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7면

40)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8면

41) 국제특허분쟁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66면

42) Sidley Austin LLP Seminar , questions and answers

43) Sidley Austin LLP Seminar , questions and answers

따라서, 조사개시 결정 후 20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변호사의 선임, 변호사와의 협의, 사내 대응체제의 정비, 정보의 수집, 문서의 수집, 정리, 질문장과 문서, 물건제출요구서에의 회신 등 많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언어와 거리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20일 내지 30일 이내에 이 모든 것을 적절히 대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ITC에 제소되기 전에 제소 기미를 포착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TC조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사내 대응조직을 갖추고, 일상불란하게 ITC조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10명가량의 인원으로 TFT(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ITC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데 절반의 요인은 적절한 대리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적절한 미국 현지 변호사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ITC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일 것, 나. 불공정행위의 종류(특허, 상표,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에 따른 변호사와 경제요건(미국내 산업의 피해 등)을 다루는 변호사 양자를 기용할 것, 다. 핵심이 되는 사무소는 다수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을 것, 라. 자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닌 변호사를 팀의 일원으로 넣을 것, 마. 한국기업의 대리경험이 있을 것 등이다.⁴⁴⁾

다음으로, 분쟁초기에 입수한 모든 정보를 분석 정리하고 반론 쟁점을 추출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특허권의 무효여부, 특허권의 행사가능성 여부 및 침해 여부 중에서 승소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쟁점을 좁히고, 증거개시 절차에서 쟁점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청문절차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반론을 펴는 등 일관된 소송 전략 하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 제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극

히 높은 경우일지라도 통상 승률 100%는 있을 수 없으므로, 패소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피 설계 등의 안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내 국내산업의 요건이 만족되는 한국 기업의 경우는 대만, 중국 등의 후발업체에 대해 이러한 ITC제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쟁발생시의 대응방안은 다음의 표5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ITC 조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시간제약의 엄격성, 방대한 자료 및 막대한 경비를 생각할 때 분쟁경험이 많은 사내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ITC 분쟁을 경험한 유능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기 집중형의 ITC 분쟁에 대응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과 분쟁의 신속해결을 통한 소송비용의 절감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 일부 국내 대기업이 ITC 분쟁에서 잇달아

〈표 5 미국 ITC 제소 대응전략 요약〉⁴⁵⁾

구분	대응방안	
사전예방 (분쟁예방)	자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제품개발단계에서의 문제특허 조사검토/대응방안 수립 (회피 설계, 비침해/무효 Opinion) 핵심부품 도입 시 특허 보증계약을 통한 향후 Damage 대비 OEM 공급 시 특허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분쟁발생시 대응	공격	대상업체 정보/제품조사를 통한 자사 활용권 선별 대상업체에 대한 Counter-claim(ITC or District Court)
	방어	제조정보 사전입수 단기 집중형의 소송에 대비한 일상불란한 사내대응체제 구축 신속한 회피설계안 도출 및 적용을 통한 금수조치에 대응 유능한 ITC변호사 선임 특허검토를 통한 반론쟁점 추출 기한 내 정식의 구체적인 답변서제출 입증사항과 쟁점을 염두에 두고 증거개시에 임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논리를 예상하고 방어채수립 비밀보호특권을 활용, 상대방의 증거입수를 가능한 제한
협상	소송비용 및 Damage를 고려한 협상 및 계약 추진	

승소한 뉴스는 희망을 주는 낭보로 대응 방안을 분석하여 분쟁 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발명특허 2009, 8

44)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앞의 자료, 271면

45) 고명화, 앞의 자료, 22면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특허]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구성요소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수단 또는 공정을 의미함.

구성요건 [디자인]

지식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성(물품에 표현될 것),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시각을 통한 것), 심미성(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구비해야 함.

구성되는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 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구성된”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 표현을 개방형(close-ended) 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류 [법일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구두증거배제 법칙 [법일반]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그 중에 정하여진 바가 당사자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당사자간의 교섭, 양해, 합의 등이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Fusion Systems Corporation in Japan

본 사례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철호 교수의 지도하에 이희철 석사과정생이 공동으로 작성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걸쳐 발생한 Fusion Systems Corporation과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간의 특허분쟁사례를 연구하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협상 관련 교훈을 정리해 본다. 1971년 Fusion Systems Corporation 사(이하 “Fusion”)는 1950년대 실패사례로 공개된 자외선(UV light) 추출실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고성능마이크로파램프(high-powered microwave lamp) 발명사업에 착수한다.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1974년 상용화에 성공하고 미국에 이어 즉시 유럽, 일본에도 특허출원을 신청한다. 이후 1975년부터 해외사업을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공정분야와 영상분야에 과감히 진출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다. 반도체공정사업분야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특허제도의 강력한 보호 속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반면, 일본 내에서는 특허출원과정에서 경쟁사들의 기술도용으로 인해 시장의 약 40%만을 차지하는데 그치게 된다. 1980년까지 Fusion의 일본시장점유율은 UV처리사업분야에서 5%, 반도체공정사업분야에서 50%, 영상분야에서 80~90%이며, 이 중 영상사업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동시에 Fusion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다. 한편, 영상사업분야의 일본 내 경쟁사인 190억 불 규모의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이하 “미쓰비시”)는 영상사업분야는 이미 포화된 시장이고, 경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비주력 사업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영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Fusion은 1974년 일본에 특허출원 신청 후, 1975년부터 UV처리램프 판매를 시작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한다. 1977

년 미쓰비시는 Fusion의 램프를 구입하여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983년까지 총 139건의 특허를 출원한다. 이에 비해 Fusion은 1983년까지 20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했을 뿐이며, 심지어 1981년 Fusion의 특허출원에 미쓰비시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도 미쓰비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1983년 영상 사업분야에서 미쓰비시가 구(球)형 마이크로 램프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현지 영업부서가 Fusion도 이를 제작할 것을 건의한 시점에야 비로소 미쓰비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양사 간의 특허분쟁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먼저 Fusion은 원천기술이 Fusion에 있고, 미쓰비시의 특허는 Fusion의 마이크로파램프를 복제하였거나 미미한 변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미쓰비시는 자사의 특허가 1960년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성능 마이크로파램프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Fusion의 마이크로파램프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 공교롭게도 Fusion은 1983년 한두 달 사이에 영상사업용 구(球)형 마이크로 램프를 제작해낼 정도로 기술면에서 미쓰비시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었고, 1987년에는 AEL(Area Exposure Lamp)을 판매하면서 미쓰비시 제품을 비롯한 기존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다시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특허제도가 단일청구항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만큼, 특허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Fusion으로서는 미쓰비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1983년부터 1989년까지 Fusion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세 가지 전략 즉, 주요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 외 해결을 위한 개별협상, 미국정부로부터의 지

원 요청으로 맞선다. 1989년까지 미쓰비시의 238건의 특허 출원 중 24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1985년부터 시작한 개별협상에서 Fusion은 자사의 기술이 원천기술임을 들어 미쓰비시가 Fusion에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동안의 이의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미쓰비시측은 Fusion에 대해 핵심램프기술에 대한 글로벌라이센스를 무상으로 요구하는 한편, 동시에 거액의 현금과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여 초기 개별협상은 무산되고 만다.

이후 계속되는 난항 속에서 1987년 Fusion은 미쓰비시에 대한 특허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미쓰비시로부터 일방 라이선스를 얻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미쓰비시의 내부반대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합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Fusion의 회장인 Don Spero가 100,000달러의 합의금지금을 제시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Fusion은 특허 변호사를 통해 미쓰비시가 1977년 Fusion의 램프를 구입했다는 사실과 Fusion의 원천기술을 최초 특허 출원 시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당시 미쓰비시가 일본특허청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응해 미쓰비시는 Fusion으로부터의 램프구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쓰비시 램프와 Fusion램프의 기술적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위해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Fusion도 학술회의를 주관하여 미쓰비시 램프의 주요 특징이 Fusion이 개발한 UV램프의 핵심기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1988년 미국의 PBS “Frontline”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양사의 특허분쟁이 소개되고, 언론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 Fusion은 미정부의 지원을 얻기에 이른다. 미국무역대표부의 성명은 특허분쟁이 양국 간의 무역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충분했고, 미국 정부 및 의회도 본격적으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양국의 무역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후 양사는 몇 차례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Fusion이 일본 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화해하였다. 최초 미쓰비시가 Fusion에게 주장한 협상조건을 최종 화해안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사 간의 화해내용(합의내용)은 비공개로 되어 있으나

Fusion이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미쓰비시도 겉으로 보기에는 Fusion에 휘둘린 듯 보이나 최종 협상안에서 Fusion이(비록 소액일지 언정) 일정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사의 지식재산의 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립하였고, 더 나아가 특허제도·지식재산관련 법 제도에 관한 일본의 주권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미쓰비시도 소탐대실의 우를 피하고 실리를 취했다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업분야의 크기가 미쓰비시 입장에서 볼 때 매출액규모로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반대로 미국시장영업에서 얻는 미쓰비시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은 수십억 달러대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번 사건 수습을 통하여 미국 내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사업기반을 더욱 확충시킨 것을 볼 때, 미쓰비시는 지혜로운 타협의 길, 가치창출의 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Fusion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이었던 일본을 무대로 펼쳐진 Fusion과 경쟁사인 미쓰비시 간의 분쟁사례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 특허제도, 그리고 그 특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경영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시사해 준다. 또한 곤경에 처한 Fusion이 뒤늦게나마 상대국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오만함을 반성하고, 일본 특허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전략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귀감으로 소개할 만하다. Fusion은 뒤늦게나마 일본의 특허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인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pro-grant opposition procedure)’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사인 미쓰비시를 견제하였고, 동시에 미국 정부와 언론을 동원하여 당시 미·일 간의 민감한 이슈였던 무역분쟁과 연계하는 전방 위 압박을 가함으로써 마침내 미쓰비시로부터 유리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고, 일본에서 수익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참고 : 단일청구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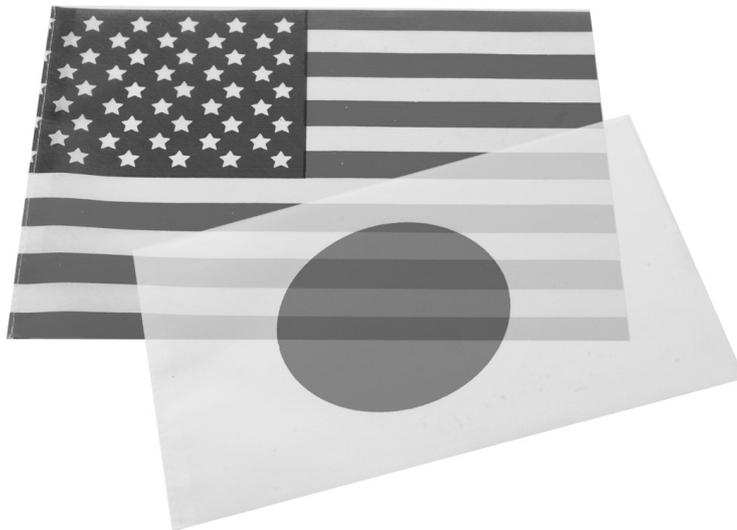
1988년 Silicon Technology Corporation은 자사가 개발한 실리콘웨이퍼절단기술(silicon-wafering saws)이 일본 현지 기업에 의해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 내 모든 특허출원을 중지하고, 해당 회사의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미국 회사들에게 절대

로 일본에 특허 출원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당시 미국은 일본 특허제도의 독특한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Fusion systems사의 회장인 Don Spero 역시 미쓰비시와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본 특허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일본과 미국의 특허제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면, 관련된 선행기술(earlier related invention; prior art)이 없어야 하며,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저한 기능성에 대해 일본의 특허제도가 미국보다 요구조건이 엄격하다는 것을 일부 전문가들은 차이점으로 지적한다. 구체적인 차이점으로는 먼저 미국의 다항제(multiple claims)와 일본의 단일 청구항제(single-claim system)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특허를 중복해서 출원하게 되며, 그 결과로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출원신청건수가 많게 되었다. 참고로 1988년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다항제를 허용하게 된다. 청구항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청구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의 양국 특허제도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청구항 해석은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범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이른바 ‘사시미

제도(sashimi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특허제도의 차이는 특허 출원진행절차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선발명주의, 특허권 교부까지 기밀유지, 특허권 교부 후 이의신청을 따르는 반면, 일본은 선원주의, 심사 전 자동공개, 특허권 교부 전 이의신청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기술적으로는 자국회사와 외국회사에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으로 원천기술을 둘러싼 수많은 가지치기 특허가 출원되는 특허범람현상(patent flooding)과 그에 따른 실시권의 상호교환(cross-licensing) 및 특허공유현상, 마지막으로 일본특허청의 관료주의 및 인력부족을 들 수 있다. Don Spero는 이러한 미국과 일본 특허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특허제도는 미국과 근본부터 다르다. 미국은 발명가(혹은 회사)에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반면, 일본은 마찰을 지양하고 상생을 권장하는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특허제도 또한 그러하고, 따라서 일본의 특허제도하에서는 실시권의 상호교환(cross-license)을 경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발명특허 2009. 8



한국여성발명협회 - Zoom in	
생활발명운동 확산과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24
특허 에세이	
1등만 의미 있는 특허	28
해피 CEO 인터뷰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30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3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주)진매트릭스	34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39
특허기술이전 · 사업화 성공사례	
이엑스티주식회사	40
발명칼럼	
정보통신 先導國,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47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50

생활발명운동 확산과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으로 만나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소개를 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여성, 발명?”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면 여성과 발명은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 조합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협회를 통해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성 발명의 중심축으로서의 한국여성발명협회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올해로 16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1993년 뜻있는 몇몇의 여성발명가들이 방송 출연을 계기로 발명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 ‘발명’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여성발명가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6년에 그 이름을 현재와 같은 “한국여성발명협회”로 변경했고 1999년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현재 약 4천5백 명의 회원을 가진 발명계에서 여성 과위를 뽐내는 대표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특허청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 발명 문화 확산, 발명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여성발명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 첫째,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발명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발명품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여성발명품박람회와 세계여성발명대회를 개최, 마케팅과 홍보에 취약한 여성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변리 상담 및 자문서비스나 지식재산권 설명회, 여성발명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의 기발한 생활발명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산업재산권을 획득해 사업화, 거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 여성 중심의 발명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발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발명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해 여성발명가들의 성공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우수 발명품을 홍보하고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를 접수, 심사하여 시상하는 여성발명경진대회를 열어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 여성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촉진하고 홍보합니다.

여성장애인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펼쳐 신체적 불편함

을 창의력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10월에는 발명가족페스티벌을 통해 발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속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간지 '발명하는 사람들'을 발간해서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뿐 아니라 기업, 대학, 정부, 국회, 공공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여성 발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수한 발명인을 육성,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식재산권 설명회와 여성발명창의교실을 열어 자녀들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 발명에 관심이 있는 여성 및 자녀 지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발명지도사 과정을 운영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창의력 및 발명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조기 발명교육의 실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대생발명캠프를 개최해 발명 체험 실습과 심화된 창의성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미래 여성 발명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발명인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여성발명' 이냐는 것입니다.

여성발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생활 속의 발명 문화가 조성된다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발명은 곧 국력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창의적이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자녀 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어머니의 이런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려면 창의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창의적으로 변화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성발명'의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 '여성발명협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관찰력, 유연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를 발견하고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생각해보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발명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 특징입니다. 언뜻 소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성발명이 갖는 가장 큰 힘입니다. 또 이후의 파급 효과도 크고 개량, 활용되는 방식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성발명품들이 제품으로 출시되면 시장에서 금방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성 발명품들은 산업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창의성의 발휘로 자신만의 독특한 발명품을 만들고 여성 기업가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용유 정제기, 스팀청소기,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분리형 운동화 등 우수한 여성발명품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성의 잠재성을 깨워서 창의성의 발현을 돕고 산업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한국여성발명협회가 갖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창의력과 여성 인력의 활용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수한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성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활용한 발명으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여성들을 지식재산권을 통해 여성경제인으로 배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

합니다.

저는 발명 분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발명이 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해 여성의 창의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의 성공적 개최

한국여성발명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된 여성발명진흥 사업의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2008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여성발명의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희 협회가 발명품박람회, 재식재산권설명회 등 본격적인 여성발명진흥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01년 여성의 특허출원 등록 건수가 4,032건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08년에는 7,772건으로 92.8%, 전체 출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3.1%에서 '08년 4.8%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국내에서의 여성생활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여성 중심의 생활발명운동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협회가 지금까지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08년 5월에 특허청 주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Exposition : KIWIE)와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 대회도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세계 35개국에서 해외 여성발명기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35개국에서 35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작년보다 참가 규모가 증가하여 세계 많은 여성발명 기업인들의 호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개최된 이 대회는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명품을 겨루고 서로의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한 화합의 장이자 흥겨운 축제였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KIWIE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여성발명기업인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발명품의 홍보 및 전시를 통해 실질적인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은 지식재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발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럼은 세계 여성발명인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발명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포럼과 더불어 올해 처음 세계여성발명기업인워크숍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화여대리더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IP Panorama)과 한국 여성발명협회의 오래 여성발명교육 노하우를 접목해 실제 비즈니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의 사례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해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발명의 달에 열린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명실 공히 전시, 경연, 학술,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어우러진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축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설립

WIN4B(Women Inventor's Network for Business : 사업을 위한 여성발명인의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대한민국여성발명포럼('Korea International Women's Invention Forum')을 통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참가국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여성발명포럼은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지식재산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최로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되었고, 올해 2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8년 포럼에서 각 국 대표단은 세계여성발명기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으며 2008년 1차로 18개국 대표단이 합의해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금년 5월 제1차 총회와 신규 회원 조인식이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새로 8개국에서 합류하여 현재 세계여성발명·기업인(WWIEA)의 회원국은 총 23개국의 28단체가 가입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협회의 회원 자격은 각 국의 발명 및 경제관련 단체, 발명특허를 가진 여성 기업이며 협회가 안정되고 원활해지기 전까지 사무국은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세계 여성발명인과 기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21세기의 지식재산경제시

대에서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거나 발명 잠재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장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지식재산약소국)과 선진국(지식재산강대국) 간의 지식재산권 격차로 인해 저개발국가의 여성발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국제적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만을 위한 정책의 부족과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성발명기업인들과 발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인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우수 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해 지식재산권 관련 나라별 격차를 줄이고 저개발 국가의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세계 여성발명인들의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발명기업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차별화된 지원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비율이 커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 지식재산권을 갖고 경제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 시대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첨단 기술의 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선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원천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섬세한 감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생활발명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경제력을 갖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국내의 여성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들이 발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 경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가 세계 여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만 의미 있는 특허



이 승 종

(현) 특허청 대변인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홍 일 오후 박태환 선수의 로마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400m 예선탈락을 보면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
우 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어떤 이는 종종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공부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
을 분노케(?) 한 경우를 보곤 한다.

사실 운동선수와 비교하면 공부가 쉽다는 것을 필자도 수긍한다. 대한민국 고3 학생 중 몇천 명은 일 년에 대한
민국 최고의 학부라는 서울대 합격의 영예를 맛보지 않는가? 반면 많은 수영선수 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대회의 금, 은, 동 정도에 불과하니 그 숫자로 볼 때 수영보다 공부가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의 세계는 운동의 세계보다도 더욱 치열하고 살벌하다. 2등마저도 결코 의미가 없는 세상이 바로 특
허의 세상이다. 즉, 2등과 100등의 가치가 '0' 으로 같은 곳이 특허 세상이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1등 특허를 선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제품을 부품결합체로 보지 말고 특허결합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120여 개 부품으로 결합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만, 이 부품들에 7만여 개
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한 부품 위에 엄청난 특허가 존재하고 있는 셈
이다. 부품만을 보지 말고 특허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전술의 이용이 필요하다.

몇 억을 투자해서 핸드폰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한 회사가 완성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더니, 그 특허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선점하고 있었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면 이 회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회사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분석 및 대응전략 없이 연구개발에 임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석 없는 무모한 연구개발 투자가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다. 경쟁사의 기술동향 및 특허동향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소위 고정식 청장님 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 R&D 및 민간기업 자체 R&D를 통한 특허창출, 외부로부터 특허매입, 제3기업과 특허제휴 등의 다각적인 특허 획득전략의 수립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하루라도 빨리 특허출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먼저 발명하였다고 국가가 당연히 주는 권리가 아니다. 발명자가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특허 심사관이 이를 심사하여 특허를 줄 때만이 특허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발명만이 능사가 아니고 권리화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치열한 특허세계에서 1등을 선점한 업체는 계속 1등을 유지하며, 후발업체는 계속 뒤따라가며 이삭이나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순서가 고착화 된 세상이라면 세상은 살맛 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치 않더라도 늦게 된 자도 빠를 수 있어야 세상은 살맛 날것이기 때문이다.

후발주자가 특허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청장님은 “특허 알박기”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신다.

부동산 알박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넓은 땅은 아니지만 목 좋은 곳에 가지고 있는 땅은 개발자에게 정

말 필요한 땅이기에, 땅 소유자가 부르는 가격대로 거래가 형성되곤 하는 알짜배기 땅이다.

기술에도 이런 기술이 있다. 그 기술 위에 특허라는 옷을 입히면 그 특허는 ‘알박기 특허’가 되는 것이다.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도시바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이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도시바와 삼성이 정보 저장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려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개발경쟁에서 뒤쳐진 샌디스크는 다른 행보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 진입했다.

정보가 정확하게 저장되었는지를 가능할 수 있는 고속컨트롤러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알박기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바와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고청장님은 ‘알박기 특허’를 다른 말로 ‘길목 특허’라고도 한다. 길목을 잡고 앉아서 통행료를 받는 것을 상상해 보라.

공부보다 운동보다도 더욱 치열한 특허의 세계는 냉정하고 싸늘하다. 이런 무한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기술개발과 특허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님 문고리 잡기식 성공은 이제 요원하다. 먼저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정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야 할 때다.

등산에 비유하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상에 먼저 도착한 자만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다. 어떻게 상대방보다 먼저 앞서나갈 것인가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명심하자.

발명특허 2009. 8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차별화된 친환경 특수도료 개발로 도료업계의 World Leading Company를 꿈꾸는
듀라케미(주)의 김동규 대표이사를 만나보자



듀라케미(주)
김동규 대표이사

1. 대표이사님께서 친환경 특수도료에 대한 연구를 언제 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도료 제조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1999년, 듀라케미를 설립하여 친환경 특수도료가 차세대 주 Item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도료제조를 시작 하였으며, 대형 Paint Maker 제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Concept, 즉 차별화된 친환경 특수도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듀라케미(주)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주 생산품은 미끄럼방지포장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포장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저마찰형 방오도료, 선박 및 철 구조물 특수도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 신기술 및 각종 국가 공인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는 없는 신 개념의 친환경 도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지난해 베스트브랜드 대상이었던 ‘듀라스키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 회사의 주 생산품인 미끄럼방지포장재(DURA-SKID)는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344호 지정,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한국선급인증,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 친환경표지인증, 품질보증 Q마크 인정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매년 조달청 발주기준 40%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 미끄럼방지제 부분 “BEST BRENDR 대상”으로도 선정된 제품입니다.

또한 최근 출시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포장재(제품명 : DURA-BIKE)는 기존의 자전거도로에서 나타나는 크랙, 황변, 미끄럼 안전사고 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제품으로 당사가 보유한 건설신기술과 특허(5건) 및 실용신안(3건) 등 미끄럼방지관련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를 접목하여 친환경 및 충격흡수성이 뛰어나 피로감이 적고 색상 및 디자인이 다양하며 특히 기존 제품에서 볼 수 없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부여하여 젖은 노면에서도 안전사고



공장전경

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 대표이사님의 경영비전은?

듀라케미는 사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부·건설교통부 신기술(NET)과 30여종의 특허와 각종 국가 공인인증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 임직원 50명 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 13명)에 매년 매출의 8~9%를 R&D비용으로 투자하여 신기술개발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국내 3대, 세계 10대 Paint Maker를 목표로 하는 양적인 성장과 세계에서 저희 회사만 보유한 신기술개발로 질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5.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듀라케미(주)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시장에 있는 도료의 정의에서 벗어나 IT, 나노기술 등과 융합된 도료와 친환경의 대표적인 TREND인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방식기능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료업계에서 World Leading Company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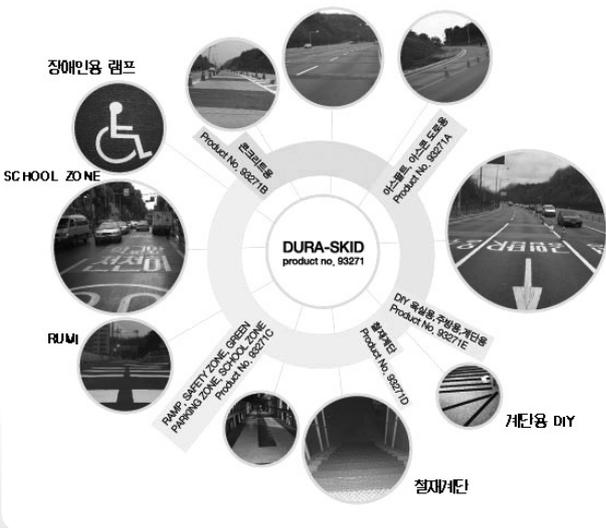


연구실





DU-SLIP 코팅원료



6. 마지막으로 CEO를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옛말에 사람은 자신이 본 데로 보고 듣는 데로 듣고 생각하는 데로 생각한다 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자신이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많은 독서와 생각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그릇을 키우기 위해 항상 자신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항상 자신의 미래에는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생각으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들리는,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위치와 역량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명특허 2009. 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nswer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
 다만,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새로운 취소이유의 송달이 있는 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는 청구항마다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Answer

-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모양(외형)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아시아 최고 진단 전문 회사의 닷이 올랐다 특허기술 평가, 유형의 가치 보다 더 큰 무형의 가치 있어



(주)진매트릭스 **GENEMATRIX**
Diagnostics & Therapeutic Solution

(주)진매트릭스는 지난 2002년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기반기술인 RFMP(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염기 분석 방법)를 개발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DNA를 이루는 4가지 염기가 각자 고유한 질량값을 가진다는 원리에 착안해 유전자를 나노 크기 입자로 만든 뒤 질량값을 측정해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신개념의 나노 진단법으로 (주)진매트릭스는 특허기술 평가를 통해 이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은 바 있다.

(주)진매트릭스는 지난 2000년 설립된 맞춤형약 전문 바이오벤처 회사이다. 이 회사는 자체개발한 기반기술인 RFMP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유전체를 연구하여 질병에 대한 최적의 예방,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생명공학 및 의학의 미래상인 '맞춤의약'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RFMP 외에도 1dalton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량 기술, 통계 기법을 통해 환자의 병 발생을 예측해 내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나노 테크놀로지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 변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기술(Platform Technology)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분석기술로는 PCR(1986년), Line Probe Assay(1986년), Hybrid Capture(1987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 중 최근 임상에서의 유전자 분석·진단 필요성의 증가로 인해 Line Probe Assay와 Hybrid Capture 원천기술에 기반한 진단제인 B형간염 및 C형간염진단제, 그리고 자궁경부암 진단제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혼성화(hybridization)¹⁾를 통해 유전자 변이를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하나의 시료에 여러 타입(Type)의 유전자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우점종²⁾인 하나의 타입만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소

량의 타입들은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분석기술이 시급히 필요했다.

지난 1991년에 미국의 Affymetrix社가 개발한 DNACHIP 원천기술이 그러한 기술 중 하나이다. 이 기술은 cDNA³⁾로 탐침(probe)⁴⁾를 제작하여 유리판이나 반도체 등의 고형판에 고밀도로 부착시켜 두고 검체 속의 target(mRNA나 DNA 또는 PCR로 증폭된 DNA)에 형광물질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부착시켜 혼성화(hybridization) 반응에 의해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탐침에만 결합하게 하여 그 결합 양상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도 진단시장에서 초기 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기술이 유전자분석 및 진단 분야에

서 차세대 의료기술로서 주목 받고는 있지만 이 기술의 원 개발자가 미국 회사인 Affymetrix社였던 만큼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회사가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2건의 DNChip 관련 원천특허(Issued No. 0118362 and 0118659)를 출원해 획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술은 이 기술 시 활용하는 탐침이 잘 못붙는 경우 아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기존 유전자 분석 기술 한계 극복한 RFMP 개발

이러한 때에 (주)진매트릭스가 지난 2002년 개발한 RFMP(Restriction Fragment Mass Polymorphism, 제한효소 절량다형성) 기술은 주목할만한 기술이다.

DNA에 탐침을 붙이는 기존 DNChip 기술과는 달리 DNA 그 자체를 직접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DNA를 이루는 4가지 염기가 각자 고유한 질량값을 가진다(질량값이 다르다면 변이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원리에 착안해 DNA 내 유전변이가 밀집한 부위를 직접 절단해 진공관 안 유전자 조각에 레이저를 쬐어 나노 크기 입자로 만든 뒤 질량값을 측정해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신개념의 나노 진단법이다.

즉, 이 기술은 교잡 반응 단계는 물론 탐침도 없이 유전자 내 수십 가지 변이를 직접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어 기존 유전자분석법에 비해 정확도, 민감도, 중복감염 진단능력, 상대량 분석, 신규변이 조사능력, 대용량 처리능력 등이 우수하며 기존의 유전자변이 분석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약제내성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 RFMP의 장점 참조〉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기술은 이미 진단검사의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Clinical Chemistry의 표지논문으로 2005년 7월호에 게재돼 '향후 유전자 진단기술 분야를 변화시킬 차세대 기술'로 소개된 바 있으며,(이 때 RFMP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2006년에는 아시아태평양약간학회에서 회



1) DNA 또는 RNA는 구조적으로 서로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DNA 또는 RNA와 서로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현상을 말한다.
 2) 생물군집에서 그 군집의 성격을 결정하고, 군집을 대표하는 종류를 가리킨다.
 3) 우리가 익히 부르는 DNA란 Genomic DNA인데, 이 DNA 중 일부가 전사한 것인 mRNA를 Reverse transcriptase란 효소를 사용하여 mRNA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DNA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cDNA이다.
 4)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찢어 보는 기구

〈표 | RFMP의 장점〉

	기존 유전자 분석 기술	RFMP
정확도		DNA의 이중나선을 동시에 분석
민감도	1,000 copies/ml 이상	100 copies/ml
소량 존재 바이러스 진단	우점종 대비 최소 50%가 필요	우점종 대비 0.1%만으로도 충분
상대량 분석	야생형과 변이형 간 양적 대소만을 분별	변이형, 변이형과 변이형간 상대적 정량이 가능
신규변이조사 여부	X	O
대용량 처리 여부	X or O	O

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RFMP 기술은 의학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Gastroenterology, Hepatology 등 최근 3년간 30여 편의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고 올해 9월에도 세계 학술지 Nature 자매지인 Nature Protocols에 소개되는 등 RFMP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는 드물게 진단 기술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 결과 (주)진매트릭스는 지난 2007년 ‘대한민국 특허기술상 대상’ 을 수상했다.

특허청은 매년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술의 독창성과 고도성이 뛰어나고 향후 시장성이 큰 특허를 심사, 특허기술상을 시상해 왔다.

기반, 원천기술로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이러한 RFMP 기술은 지난 해 초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서 등재되어 많은 환자들, 특히 간염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4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 나라의 간염환자들은 1998년 이후 개발된 다양한 신약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장기 복용 시에는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 아니 내성이 생겼는지 혹은 내성이 곧 생길 예정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RFMP이다. 따라서 간염환자들은 이 기술을 통해 치료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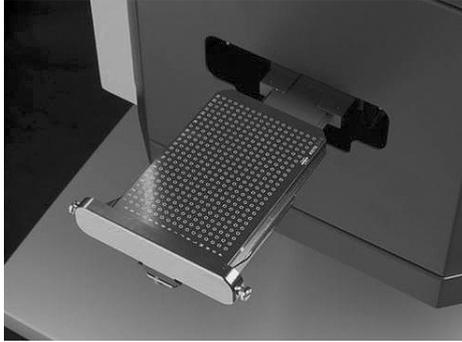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적용한 B형 간염 약제 내성 검사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원 간염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시행하고 있다. 간염 외에도 자궁경부암 진단, 항암제 내성 검사 등 주요 질환의 맞춤치료에 필요한 거의 모든 유전자 분석에 적용할 수 있어 유전자 특수 진단의 원천기술로 응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주)진매트릭스는 자궁경부암의 유력한 원인 인자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에 레이저 광선을 쬐어 진공관에서 기체화한 뒤 유전자의 질량을 측정해 그 종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진단법은 탐색물질과 유전자간 화학반응을 간접 관독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

부설연구소 전경





MALDI-TOF : DNA 질량분석 장비



이치 프로토콜'의 최근호에 실려 널리 알려진 것이다.

또한 일례로 암이 전이되어 수술대신 항암제를 투여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치자. RFMP 기술이 개발되기 전 이 환자는 투여한 항암제가 제대로 말을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 이 항암제가 제대로 말을 듣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RFMP 기술은 사업적 측면에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진매트릭스는 현재까지 기술이전에 의한 로열티로만 연간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중소기업인 (주)진매트릭스가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한 직접 수익과 더불어 특허를 바탕으로 한 기술이전을 통해 추가이익을 만들어 내는데 보다 높은 경영전략을 사용한 것은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특허권을 이용한 수익창출은 대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특허는 최소한의 업무에만 활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의 엄격한 벽, 연구와 특허기술 평가로 넘어

하지만 (주)진매트릭스가 이 같은 성공신화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에 기존 기술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

여야 하는 어려움과 같은 것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었다.

RFMP가 개발된 뒤 이 기술을 지금과 같이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땀방울에 비한다면 말이다. 이 기술은 의료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의료기관, 의료인 및 보건당국의 신뢰를 얻어야 사업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시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새로운 기술(신의료기술)을 받아들임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했다. 따라서 (주)진매트릭스로서는 RFMP가 개발된 뒤에도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은 것이다.

그래서 (주)진매트릭스는 의료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충족 또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전문 학술지 또는 의학관련 학회에서 본 기술의 우수성을 피력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의학 전문가와의 임상연구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여야 했다.

이와 함께 (주)진매트릭스는 RFMP에 대한 특허기술 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술이전, 마케팅 자료, 투·융자 등 자금 유치용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했다. RFMP가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주)진매트릭스는 지난 해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기술 평가를 받았다. 이 때 평가수수료의 80%인 2천만 원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렇게 진행된 특허기술평가에서 RFMP는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분석받았다. 이를 토대로 수익접근법에 의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한 결과

〈표 | 특허기술 평가 결과 나타난 RFMP의 가치〉

기술수명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285억 1,400만 원
기술자산구성비(㉡)	36.96%
기술완성도계수(㉢)	0.625
기술기여도(㉡=㉠× ㉢)	23.10%
총 기술 가치(㉠× ㉡)	65억 8,600만 원

RFMP는 약 65억 8천6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표 | 특허기술 평가 결과 나타난 RFMP의 가치 참조〉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주)진매트릭스의 예상대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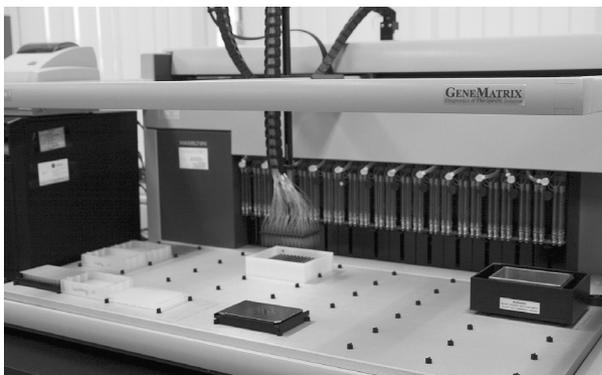
먼저 기술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데 이 결과가 중요하게 쓰였다. 국가기관에서 평가 받은 것이니만큼 그 후광효과가 상당했던 것이다.

또한 바이오벤처로 인증받아 코스닥 등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특허기술 평가가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국책 과제 지원 시에도 (주)진매트릭스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주)진매트릭스는 특허기술 평가 결과가 회사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힘은 이러한 유형적인 어떤 것보다 회사 신인도 상승, 연구개발 인력의 자부심 상승과 같은 무형의 가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무형적인 가치를 토대로 (주)진매트릭스가 RFMP 전용장비, 키트 등을 포함한 RFMP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최고의 진단 회사, 맞춤 의학 회사가 될 날을 기대해 보자.

다용량 자동화 분석장치



CEO 인터뷰 _ (주)진매트릭스 유왕돈 대표

유 대표는 CJ 종합기술원에서 인연을 맺은 동료들과 함께 지난 2000년 (주)진매트릭스를 창업해 현재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그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업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가진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중소기업 경영인이다.

이 기술이 회사와 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이 기술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R&D 투자 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매출 대비 70~80%(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포함)를 투자해 RFMP 전용 장비를 제작해 이를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고객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RFMP 키트를 제작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RFMP라는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서 RFMP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R&D 투자 등 지원은 회사전략 및 비전 아래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향후 아시아 최고의 진단 분야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 회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핵심기술을 개발해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통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립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평소 경영철학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해 '인재제일주의'입니다. 기술을 창조하는 것은 창의성이며,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 덕분에 우리 회사의 중요 연구인력은 저와 지난 15~20년이란 세월을 함께 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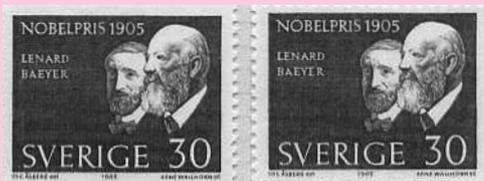
이와 함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종 인증이나 평가가 자금 등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꽤 있으나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이 평가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과 직접 연결되어 긍정적입니다. 이에 감사 드립니다.

| 발명특허 2009. 8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레나르트[Lenard, Philipp (Eduard Anton von), 1862. 6. 7 ~ 1947.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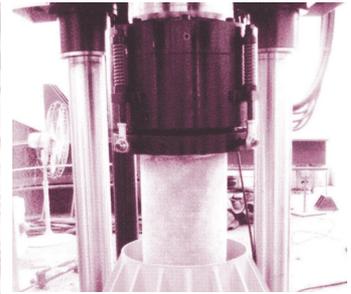
독일의 물리학자인 레나르트는 1888년경부터 음극선 연구를 시작, 특히 음극선의 석영창(石英窓) 통과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 결과는 부정적이었으나, 그 후 헤르츠의 힌트를 받아 1894년 알루미늄박(箔)의 창(窓)을 이용하여 음극선을 관외(管外)로 끌어내는 ‘레나르트의 창’의 제작(레나르트관)에 성공하여, 음극선 연구에 신기원을 열었다. 이 업적으로 190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바클라[Barkla, Charles Glover, 1877. 6. 7 ~ 1944. 10. 23]



영국의 물리학자인 바클라는 초기에 도선(導線) 안에 전파(傳播)되는 전파(電波)의 속도를 연구했으나, 후에 X선의 연구로 방향을 바꾸어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 업적을 남겼다. 즉, 특성(特性) X선에 관한 발견과 연구, 2차 X선이 산란선(散亂線)과 형광선(螢光線)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 X선의 편광현상(偏光現象)의 발견, 흡수(吸收) 및 사진작용, X선산란에 의한 원자(原子) 내 전자수(電子數)의 추정, X선에 대한 양자론(量子論)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등이며, 이러한 연구 업적으로 1917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자료제공 화상 아뜨리에(<http://blog.daum.net/philook>)



이엑스티주식회사

보강판을 이용한 헤드확장 콘크리트파일

회사소개

이엑스티 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에 Ext-Pile을 개발하여 건설공사의 공기단축, 친환경적 공법, 원가절감 극대화 등 국내 파일공사의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의 자체적인 연구와 성균관대학교 등과 산학협동 R&D를 통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안전한 기초의 설계기법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Engineering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주요 연혁

- 2004. 05 이엑스트 유한회사 설립
- 2004. 06 Ext-Pile 기술서적 5권 출간
- 2004. 07 성균관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개발 추진
- 2005. 03 벤처기업 획득(중소기업청)

- 2005. 04 이엑스티 상표 등록
- 2005. 04 전문건설업 등록(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업)
- 2005. 05 전자신용 인증서 취득
(2007년 기업신용등급 BB)
- 2005. 11 이엑스티 연구개발부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전담부서 승인)
- 2005. 12 한양대 초대형 연구실과 이엑스티파일 성능 시험 완료
- 2006. 1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획득 ISO 9001:2000/KS A 9001:2001
- 2007. 04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인증서 승인
- 2007. 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 2007. 08 대한건축학회 건축연구소 건축성능인증서 승인
- 2007. 10 이엑스티 주식회사(조직변경)
- 2007. 12 SBS 「중소기업~대한민국의 힘」방영



2008. 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Ext R&D Center)

2008. 08 이엑스티 주식회사 인천지점 개소

I.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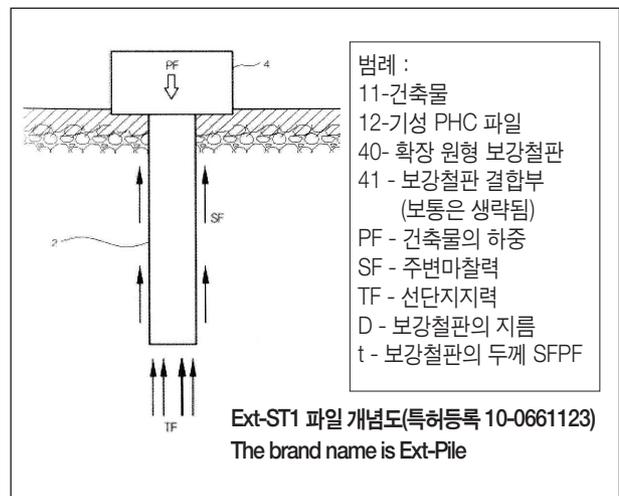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특허		8	8	14		14
실용신안						
디자인						
합계		8	8	14		14

주) 해외특허출원 :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II. 사업화 성공기술 개요(신청과제)

권리명칭	보강판을 이용한 헤드확장 콘크리트파일					
출원번호	2004-0069284			등록번호	10-0661123	
제품적용 실적	적용 품목	총 매출	14,731	국내매출	14,731백만 원	
	제품수	실적	백만 원	해외매출	백만 원(\$)	
발명(고안)의 요지	<p>본 발명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게 하는 콘크리트파일 시공 시 파일내력에 대한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개선한 보강판을 이용한 헤드확장 콘크리트파일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파일의 매입측 선단부에 파일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갖는 보강판을 형성 하면서 그 중심에 내·외부면 동일 연장폭을 형성하게 중심공을 뚫어 지면 내력에 대한 파일의 선단 지지력을 증가시켜 파일수량 절감, 공기단축, 폐기물감소 등 친환경적인 공법으로서 원가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p>					

주) 동 매출실적은 본 특허 출원부터 2008. 6월말(상반기)까지 누적임.



III. 기술개발 과정

개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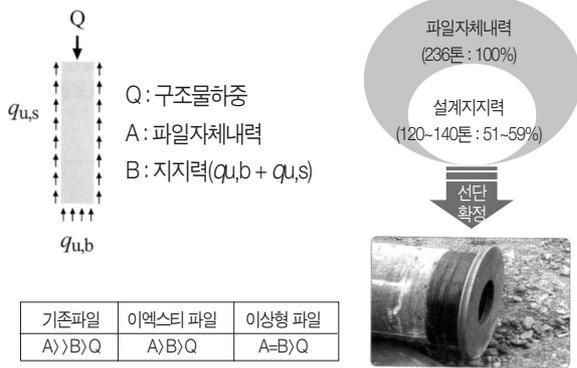
국내의 산업화의 가속화 및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 하면서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중량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이유로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지지하는 파일 기초의 시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PHC 파일의 지지력을 높이고 물량을 절감하는 공법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파일이 시공되는 건설환경의 여건은 매립지역 등 지반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져가고 있어 파일의 지지력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C파일을 개선한 PHC파일은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이 우수하여 적용물량이 늘어가고 있으나 기존의 직항타 공법은 소음 및 진동 등 건설공해 요인으로 인해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굴착 후 파일을 침설하여 시공하는 매입공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본 기술개발인 Ext-Pile의 사업화에 확신을 갖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실용화 초기에는 시공실적이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으나 확실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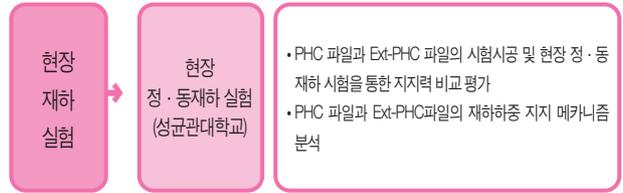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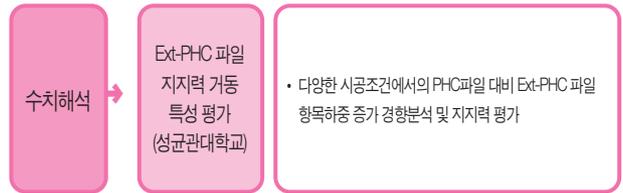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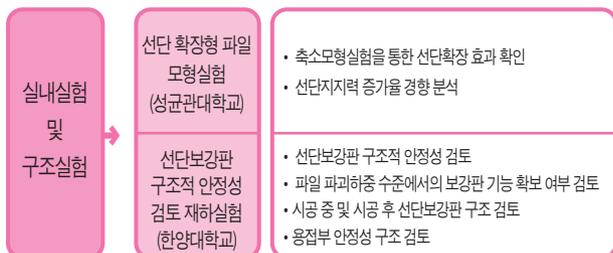
예) D600 기성 PHC 파일 A종의 경우
파일의 자체내력 236tf 중 120~140tf 만이 설계지지력으로 사용됨으로써 활용률이 50~60% 정도임



개발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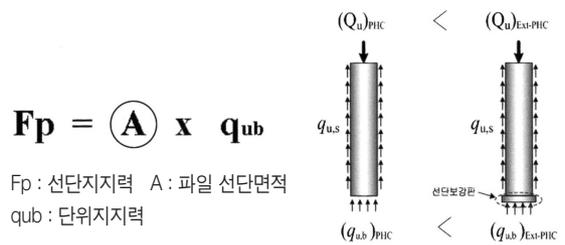
실험 및 시험 과정



기술 개발의 공학적 원리

가. 선단지지력을 높이는 원리

- 파일의 선단면적은 선단지지력과 비례함
- 원형인 파일 선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 함수이므로 약간의 반지름을 확장하여도 면적은 그 제곱으로 늘어나 큰 효과를 볼수 있게 됨



- 매입공법으로 시공되는 PHC 파일의 지지력 증진 방안으로서 선단에 선단확장 보강판을 부착
- 선단 확장을 통해 선단지지력을 증가시켜 전체 지지력 향상
- 경제적인 파일기초 설계/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공법

나. 기초의 콘크리트 및 철근량을 절감하는 원리

- 파일의 1열 배치가 2열 배치에 비해 하중의 흐름이 효과적으로 전달
- 기초의 두께와 철근량이 줄어드는 효과 발생
- 예를 들어, 기둥(벽)에 300톤의 하중작용
- 기존파일 5본과 Ext-Pile 3본은 같은 효과를 가져오며 기초두께와 철근량 감소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항목	절감효과
원가	원가절감 파일수량 감소/Con' c, 철근량 감소/부가세 절감
공기	공기단축 잔토처리/바닥정리 용이/터파기량 감소/각종 보험료, 경성비 절감
폐기물	폐기물 감소 두부정리 간소화/자재 LOSS 최소
민원	민원감소 친환경적 공사(소음 및 폐기물 감소)

본 기술의 특·장점

선단면적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단보강판 설치로 선단면적 확장을 통해 선단지지력 향상 • 모형실험, 현장재하시험, 유한요소해석으로 선단지지력 향상 효과확인 • D=400mm PHC 파일의 경우 선단지지력 40~50% 향상 확인 	선단지지력 향상
현장 적용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선단 보강판을 간단히 용접 부착 • 기존의 시공법을 소폭 개선하여 그대로 활용 • 체계적인 시공관리를 통한 현장 적용성 극대화 	현장 시공성 증대
경제성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직경 PHC 파일에 비해 증가된 설계하중 적용을 통한 파일 시공 물량 감소 • 파일 시공 분수 감소를 통한 공사기간 감소 및 기초 콘크리트 물량 및 철근량 감소 효과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IV. 사업화 과정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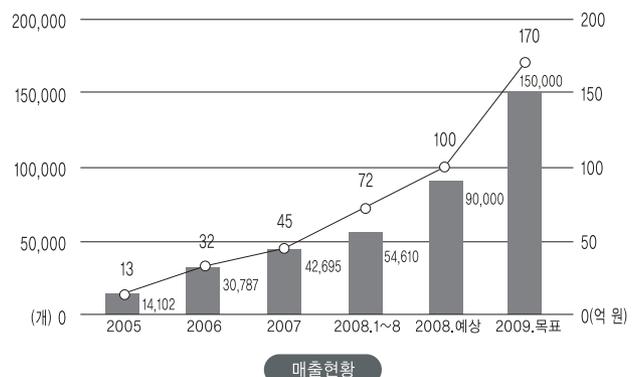
항목	향상효과
지지력	시공지지력이 월등한 파일 내 파일 자재 및 시공기술력 향상
향타값	초기 향타값이 우수함 지지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해소
품질관리	Ext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과잉 시공 및 주먹구구식 공사 지양
구조지원	기초(Footing) 구조지원 시스템 문제점 발생시 즉각 대처 가능

사업화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

- 경영 철학의 약속과 실천
 - 부단한 기술 개발과 전 직원의 전문가적 소양을 바탕으로 양호한 품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품질경영
 - 우리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객과 고객의 고객까지도 감동시키는 고객 만족 경영
-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성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신속한 컨설팅 및 제안서 제출
-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및 시공계획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물 시험 및 논문발표, 세미나 개최, 기술서적 발간
-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제안에서부터 사후관리 컨설팅
- 조직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 및 개선
- 임직원들의 교육 활성화 및 자기개발 동기부여
- 국내 대지업과의 CO-Work 시스템 마련

V.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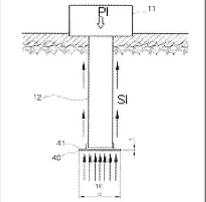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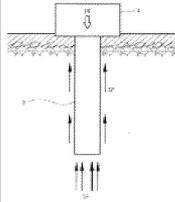


마케팅 전략 및 판로개척

구분	내용
영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를 바탕으로 한 확실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마케팅으로 연결 ■ 각 현장의 상황 및 특징에 부합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안서 제출 ■ 특허적용에 따른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실적의 증가로 Ext-Pile에 대한 신뢰 향상 ■ 다각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마케팅(시공사, 시행사, 설계사, 구조사 등)
영업 애로사항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라는 신공법에 대한 건설현장 실무자들의 보수적인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통해 수용케 함 ■ 보강판 제품 자체만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고객들의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기법 및 구조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 ■ Ext-Pile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오해(맹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의 특성 등 자연적인 요인이나 시공 오류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 등을 설명

VI. 사업화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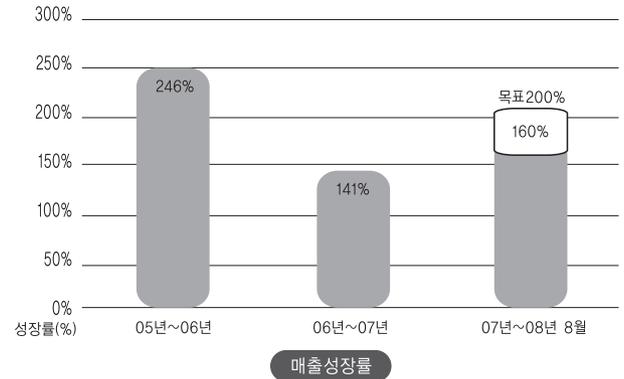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

구분	내용		
사진			
개념도			
설계지지력	140%(40%향상)	100%	
물량절감	D400	95~105 tf/본	60~80 tf/본
	D450	115~130 tf/본	80~100 tf/본
	D500	145~160 tf/본	100~120 tf/본
	D600	190~210 tf/본	120~140 tf/본
공기단축	파일수량	70%(30%절감)	100%
	콘크리트 물량	80%(20%절감)	100%
	철근 물량		
간접비	70%(30%절감)	100%	
원가절감	90%(10%절감)	100%	
원가절감	75%(25%절감)	100%	

사업화 성공 요인 및 주요 성과

구분	내용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법에 비해 확실한 물량절감 및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절감 극대화 ■ 국내 메이저 건설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수용함실적에서의 영업적 효과 기대 ■ 기업부설연구소와 산학협동을 통한 시험분석 및 Database 관리, 지속적인 연구개발 ■ 학회 및 협회의 논문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신문, 잡지 및 방송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전략 ■ 경영진의 냉철한 판단 및 추진력 ■ 이엑스티는 한 가족이라는 기업 마인드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창립이래 매년 매출 급성장(2007년 매출대비 2008년 상반기 매출 125% 달성)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등록 14건, 해외 특허출원 8건, 디자인등록 15건 등 ■ 한양대학교 초대형구조시스템 연구센터 성능시험 및 성균관대학교 실물 시험 완료 ■ 2006년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수상(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대한주택공사 사장상) ■ 2007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부서 표창 수상(노무현 대통령 참석 행사) ■ 2008년 대한민국 건설기술상 수상 외 3건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기술인증 및 대한건축학회 건축성능인증 등 ■ 국내 대기업 상위 100순위 중 27개사 시공 실적 ■ SBS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mbc "작지만 강한기업" 등 방송 다수 출연

매출 성장



기술 적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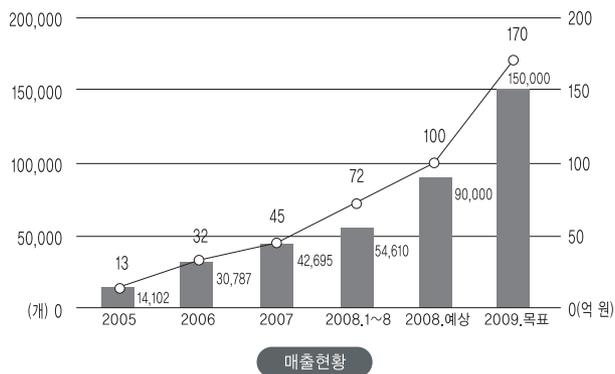
원가절감 목표달성을 Ext-Pile 기술 적용 실적 사례로 재확인(총 112개 현장 적용)

구분	미산신포 현대 ↑ PARK	포항 장성 두산위브더제니스	인천 논현지구 한화 에코메트로 2차
조감도			
층수	36F	48F	47F
파일 형태	PHC D500 → Ext-PHC D500	RCD → Ext-PHC D600	RCD → Ext-PHC D500
파일길이	38~45m	11~26m	38~45m
원가절감	2,889 백만 원	18,835 백만 원	9,789 백만 원

구분	인천오류지구 금호 드림파크 어울림	안성공도 KCC 스위첸	군산 수송지구 현대 I PARK
조감도			
층수	15F	20F	20F
파일형태	PHC D500 → Ext-PHC D500	PHC D500 → Ext-PHC D500	PHC D600 → Ext-PHC D500
파일길이	5~23m	11~29m	12~26m
원가절감	3,696 백만 원	1,221 백만 원	6,479 백만 원

VII. 향후 진행사항 및 기대효과

향후 판매량 및 매출액 추이(예상)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증대 기대

- 산업화의 가속화 및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구조물의 고층화, 대형화 및 중량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이유로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지지하는 파일 기초의 시공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Ext-Pile의 수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초고층 건물, 장(長)심도 지반, RCD대체 시 원가절감이 극대화됨
- 최근 원자재 급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 증가로 원가절감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인천송도 신도시개발 및 새만금사업 지역 등은 매립지역으로 100% 파일기초를 필요로 하는 건설 현장으로서 당사로서는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설 특수 지역임
- KBS「신화창조의 비밀」출연을 통한 이엑스티의 저력을 확인할 계획임.

VIII. 향후 시장 동향

국내·외 수급 동향 및 중장기 수급 전망

가. 연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약 80조의 100%(기초공사 비율) 8,000억 원의 시장 중 Ext-PHC파일을 사용하여 약 30%인 2,500억을 매년 절감 가능하게 한다.

나. 본 기술의 PHC파일 출하량 및 시공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M/S)을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2005년은 1.29%이고, 2006년은 3.36%, 2007년은 4.27%이며 2008년은 6.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국내 기성액	기술의 시장규모		Ext-pile의 시공량 M/S		
		파일기초 공사비	절감 기능액	PHC파일 출하량	Ext-Pile 시공량	M/S
2005년	851,820	8,510	2,550	3,766,516톤	48,572톤	1.29%
2006년	868,850	8,690	2,610	4,107,802톤	138,087톤	3.36%
2007년	886,230	8,860	2,660	4,791,450톤	204,525톤	4.27%
2008년	903,950	9,040	2,710	5,605,997톤	351,686톤	6.27%

자료 : "한국개발 연구원"

(단위 : 억 원)

다. 국내 건설 경기중 현재 건축부분에만 적용하는 시장성을 토목과 플랜트 기초 등으로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라. 해외공사의 경우 국제 특허출원 후 시장개척이 가능하다.

마. 건설(건축/토목/플랜트)분야에서 해안가(매립지)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파일기초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바. 해외 건설시 대기업과 기초에 관련된 파일공사의 협력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시장 확보 전망

가.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

상승함에 따라 기업 생존의 필수요소인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확보의 기술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다.

나. 건물이 고층화 되고, 지반이 좋은 현장은 이미 건설이 많이 되어 있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해안 매립지 등 인위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 건설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로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 토목, 플랜트 역시 운송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파일 공사의 비중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제품의 개발과 함께 기초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 시공, 품질관리의 일체화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확보가 유리하다.

해외시장 분석에 의한 수출 전망

가. 1980년대의 해외 건설 비중은 건축/토목 : 플랜트 = 70 : 30의 형태로 진출되고 있고, 2000년 이후에는 건축/토목 : 플랜트 = 30 : 70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플랜트 파일기초의 시장 전망이 밝다.

나. 해외시장의 특허 선점에 의한 시장 확보 및 수출 전망 극대화

다. 해외 건설의 투자 방향이 사회 기반시설 구축이나 대단위 개발 형태로 국내 기업의 투자방향이 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대기업과 협업으로 해외에 진출방향 모색가능하다.

라. 해외 특허 선점과 외국사와의 협업에 의한 로얄티 수출이 가능하다.

마. 동남아, 중동, 남미 등의 개발 성향이 고층화와 사회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개발 속도가 빨라 해외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제공 IP경영지원팀

발명특허 2009. 8

정보통신 先導國,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서정욱 (전과학기술부 장관)

디지털기술로 촉진된 정보통신혁명, 높아지는 대한민국의 國格

디지털기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온갖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암울했던 20세기 전반을 거쳐 후반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한민국은 고속 선진화에 몰입하여 체제우위를 입증했다. 초토화된 나라를 서둘러 재건하다 보니 한국인의 사고, 행동, 핏줄에는 “빨리빨리” 근성이 자연 발생했다. 이를 졸속의 병폐라 비하하며 한국인은 매사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다는 자타의 평을 받아 왔다. 물론, 겸허한 자기성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은 지식 및 기술 집약 제품과 서비스로 교역 10대국의 반열에 접근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은 신속한 의사소통과 지식과 정보의 창출, 교환을 수단으로 생존할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가 21세기의 정보통신 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오히려 “빠름”의 근성에 “꼼꼼”하게 일을 챙기고 마무리하는 대관세찰(大觀細察)의 슬기와 끈기를 융합하여 DNA화해

야 한다고 나는 확신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교육 및 외국어 통달에 열을 올리고 지식을 재산으로 국부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1995년 정부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www.egov.go.kr)를 2002년 11월에 개통하여 일반시민이 발품을 팔지 않고, 서류 없이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도의 디지털 미디어가 소통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지식 역량 핵심 국가로 부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가 하면 첨단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의 시장을 그들이 신제품을 연구, 개발, 시험, 평가하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21세기의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국민성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어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월등한 지식기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독창 기술이 도용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특허권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방어전략과 공격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이나 디지털 미디어들은 복제와 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Zero에 가깝기 때문에 Free Riding과 Moral Hazard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첨단기술이 연구인력 관리에 소홀하거나 취약한 보안 때문에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 인적 보안 장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한편, 기술의 발전이 워낙 급속히 이루어지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울 만큼 시스템이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간의 협력과 제휴가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진입의 성패에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를 테면 휴대전화와 같은 간단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몇 종의 특허가 아닌 수십, 수백 종의 특허가 적용된다. Patent Pool이나 Cross Licensing 같은 용어들이 전혀 낯설은 일이 아닐 정도로 이러한 협력과 제휴를 하지 않으면 해적판 모방기술이 출현하여 막대한 R&D투자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술도 침해 당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에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과 제휴하고 거래하기를 원하는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인식하고 실행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정보통신의 국제적 표준과 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의 필요성

세계의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이른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만들어 국가의 법규범이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동맹 관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

는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특허법 등 각종 지식재산 관련 법규들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 간에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조정과 중간관리를 위해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사실상의 표준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률상의 표준(De Jure Standards)을 신속하게 확립하여 산업계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법규범의 한계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입법기관이나 정책 집행기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 이보다는, 기술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의 대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확립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여타 법규범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세계 표준화 기구(ISO)는 실질적으로는 NGO단체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ISO26000과 같이 여기서 제시되는 표준들이 국제무역의 룰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측의 Buyer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들이 ISO가 제시하는 기준 충족여부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게 되는 것은 어찌만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의 국내법 저촉 여부, 국내 기업들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영향력 있는 국내 원천기술 보유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지식재산보호와 독과점규제의 조화

1990년대 이후 지식재산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은 세계 각국의 입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고, 1994년의 TRIPs와 같은 지식재산규범의 세계적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걸맞은 우리 정부의 위상정립, 정책수립 및 시행이 절실하다.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는 특정 산업계의 표준도 소속된 각 기업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이나 협력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

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와 같이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나 규모가 압도적이고 발전속도가 워낙 빨라 올해에 입법해도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절차와 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군다나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는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와 태생적인 긴장관계에 있다. 1990년대 중반 Microsoft의 미국 Antitrust Law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예외적인 배타적 독점권을 특정 기업에게 부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충돌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지식재산 정책

지난 20여 년의 지식재산 발전과정을 추적하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로서 지식재산의 폭발적인 증가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1980년 미국에서는 소위 Bayh-Dole Act에 따라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연방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소들과 대학들이 특허출원과 Licensing을 통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해졌다. 그 후 활발한 특허출원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문적 순수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불구하고, 이러한 적극적 특허보호 정책이 미국의 경제발전에도 일조한 바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 역시 지식재산의 강화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기업들이 한 때는 무척 대고 대량으로 특허를 출원해둠으로써 유명무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들이 범람했었으나, 현재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한 특허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 특정 기술이 해당 기업의 전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전시물이나 기념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등록유지비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요즘에는 기업 생존에 절실히 필요한 특허를 R&D 투자 혹은 기술거래를 통해 획득하되,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른바 3국 특허 방식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별로 필요가 없거나 시장성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획득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회수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선진국 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거래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유력한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술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대해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Pool 구축과 지식재산 정책의 조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정보통신 先導國이 되기 위해서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당당하게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또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거래 시장을 통하여 기업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특허권 중심의 지식재산 Pool이 형성되어 국부 창출의 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듯이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간해야 한다. 미국의 지식재산 장려정책,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했던 “知的財産立國”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적 총역량 및 지속성장 총동력은 과연 세계적인가? 특히 우리의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시스템의 지식창출 및 연구관리 능력이 과연 세계적인가? 우리 국민의 준법정신, 소비자로서의 공평성은 과연 세계적인가?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국가발전 전략에 조화롭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행정 및 기업경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다워야 한다.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특허권자의 의무



김현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특허법인 맥 대표 변리사

제1절 서설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성질상 한 나라의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므로, 그 사회적·공공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특허권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자의 의무로서 i)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ii) 특허발명의 실시협조의무, iii) 특허료 납부의무, iv) 특허발명의 비밀유지의무, v) 특허문헌 제출의무, vi) 수수료 납부의무 등이 있으며 이에 위반 시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 외에 특허법은 특허표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 특허발명의 실시의무

I. 의의

1)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이므로 행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발명공개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 내지 공익적 특성상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다.

2)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의 권리처럼 그대로 방임하여 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산업적 수요를 독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또한 유일하게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허권자는 어느 정도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기도 하다.

II. 실시의 강제방법

특허발명의 실시를 확보하는 방법은 특허발명의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에 대하여 강제실시권을 허락(compulsory license)하는 방법과 특허권을 취소(revocation)하는 방법이 있다.

1.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설정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107)

2. 특허권의 취소

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실시되는 것을 이유로 재정이 있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특허법 116)

제3절 특허발명의 실시협조의무

I. 의의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 특허법상 표현이다.

II. 유형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

특허된 발명이 선출원인 타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

인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권리자가 실시권의 허여를 청구할 경우에 선출원권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후출원권리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여 실시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권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출원권리자는 특허권자의 실시협조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얻을 수 있다.(특허법 138)¹⁾

2. 재정실시권의 경우

재정제도(특허법 107)와 관련하여서도 특허권자의 실시협조의무가 요구된다. 즉 국내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업에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 특허권을 재정실시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4절 특허료 납부의무

I. 서설

1. 특허료의 의의

특허료라 함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특허법 79①) 특허료의 납부는 i) 특허권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설정등록의 요건 내지 특허권의 발생요건이고, ii)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요건이다. 특허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²⁾으로 정한다.(특허법 79②)

2. 특허료의 성질

특허료의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³⁾가 있으나, 특허정책상 특허료의 납부를 권리의 설정등록요건 내지 존속요

1) 단, 상표권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의미한다(이하 “징수규칙”으로 약칭한다). 동 규칙에 의하면 특허료는 3년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액을 정하고 있으나, 이후 점차 고액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으로 하여 이러한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점권의 부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술을 일반의 공유재산으로 하자는 데 특허료의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이익보호설) 특허료의 일부 미납의 경우 보전(補填)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아 특허료를 수수료로 보는 생각(수수료설) 및 특허료를 해가 지날수록 점차 고액화하고 있는 것은 특허료를 독점에 대한 대가로 보는 생각(독점대가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3. 특허료 납부의 법적 성질

특허법 제79조 제1항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특허료의 납부가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이 소멸될 뿐이며, (특허법 81③)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특허료의 납부는 법적 의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의 소멸이라는 자기의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므로, 특허료 납부의 법적 성질은 책무(責務) 또는 간접의무(間接義務)라고 할 것이다.

II. 납부의 주체

1. 납부의무자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79①) 즉 최초의 특허료의 납부의무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이고 그 후에는 특허권자이다.

2. 이해관계인의 대납

(1)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대납(代納)할 수 있다. (특허법 80 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의 부등록 내지 소멸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예컨대 직무발명에 있어서 무상의 법정실시권을 가진 사용자 ·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 · 질권자 · 일반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자기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의 발생 · 존속을 필요로 하며, 이 한도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는 제한을 받게 된다.⁴⁾

(2) 비용상환청구의 범위

1) 이해관계인이 특허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80②)

2) 특허료의 납부는 특허권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책무 또는 간접의무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특허료의 대납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특허권의 설정 또는 유지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료를 대납한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받은 이익의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대납한 특허료 전액을 비용상환청구할 수 있다.

III. 특허료의 납부

1. 납부기간 및 방법

(1) 설정등록 전의 납부(설정등록료)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3) 조세설, 독점대가설, 수수료설, 공공이익보호설 등 ; 송영식 외, 290면.

4) 특허료 대납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i) 특허료 납부채무의 대위변제로 보아 구상권을 인정하려는 대위변제설, ii) 일종의 사무관리로 보아 비용상환청구를 인정하려는 사무관리설, iii) 특허료의 납부가 특허권자의 공법상 의무이므로 공법상의 채무의 대위변제라는 공법상 채무의 대위변제설 등이 있으나, 생각건대 민법의 제3자의 변제(民法 469)의 법리를 원용한 특허법상의 특수한 제3자의 변제라고 할 것이다. 다만, 민법의 제3자의 변제와 특허료 대납의 경우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i) 특허료 대납의 경우에는 국가와 특허권자간의 채권 ·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ii) 민법의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반해, 특허료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이름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등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규칙 8⑤⑥)

(2) 설정등록 후의 납부(특허유지료)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규칙 8⑧)

2.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간략히 추납기간)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특허법 81)

3. 특허료의 보전(補填)기간 및 방법

(1) 보전명령 및 보전기간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기간(특허법 79②) 또는 추가납부기간(특허법 81①)의 규정의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을 명하여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특허법 81의2①,②)

(2) 납부방법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i) 납부기간(특허법 79②)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ii) 추가납부기간(특허법 81①)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특허법 81의2③)

IV. 특허료 납부 시 청구항의 포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특허법 215의2) 과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만 청구항마다 포기가 가능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다.

V. 특허료 불납의 효과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81③)⁵⁾

VI.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1. 의의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여 포기기간주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간주된 특허권(특허법 81③)을 회복할 수 있다.(특허법 81의3①) 또는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5) 특허료를 납부할 자에게 특허료납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2001년 1월부터 특허권의 신규설정등록과 모든 연차분에 대하여 납부기간 만료 시에 소멸예고를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특허법 81의3③)

2. 취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인 포기기간주되거나 특허권이 소멸간주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두었으며, 특허료의 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시점에 특허발명을 실시중이었다면, 특허권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특허료 납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의 유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일정기간이내의 특허료의 추가납부를 조건으로 한 특허권의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3. 요건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 또는 보전할 수 없었던 경우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할 수 없었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 및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게을리하여 포기·소멸된 권리는 사회에 환원되어 공유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복대상에서 배제된다.

2)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추가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되도록 권리의 불확정상태를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실시 중⁶⁾ 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1)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소멸하였어야 한다.

2)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 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은 실시중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 특허료 불납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이내의 특허료의 추가납부를 조건으로 한 특허권의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의 회복을 규정한 파리조약의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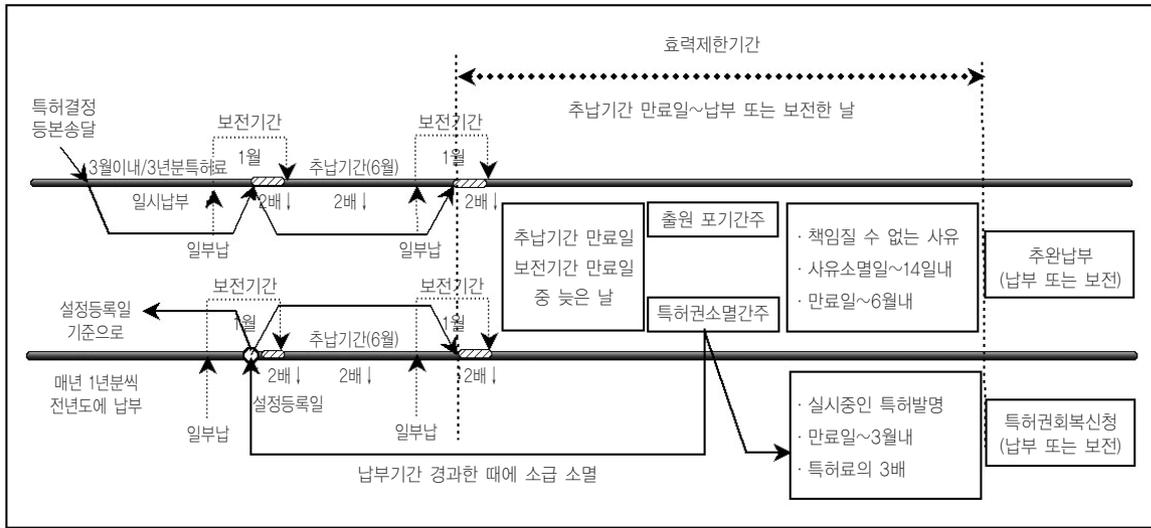
(1)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법 제81조의3 제1항에 의해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또한,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81의3②,③)

(2) 효력의 제한

6)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도, 그 실시권이 특허권자의 허락(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에 의한 것이라면 특허권자의 특허권 유지의 의사를 추정하여,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특허법 81조의 3)]



회복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특허법 81의3④)⁸⁾

(3) 법정실시권의 발생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특허법 81의3⑤,⑥)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에 대한 법정실시권은

이미 설명하였다.

VII. 특허료의 면제 등

1. 특허료의 면제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허료는 「전액」 면제한다.(특허법 83① I)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거나 이들이 공유특허권자인 경우에, 국가는 특허료를 면제받더라도 국가 이외의 자는 자기의 권리의 발생 및 존속을 위해 자기의 지분범위 내에서 자기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2. 특허료의 감면

-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감면한다.(징수규칙 7)
 - 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

7) 제5조의2(모든 공업 소유권 : 권리 유지를 위한 요금지불 하여 기간 ; 특허 : 회복)

2. 동맹국은 불지급으로 인하여 상실된 특허의 회복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

8) 특허권 등이 소멸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입법 취지로 본다면 선의의 실시의 경우에만 효력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불비라 보여진다.

급자, i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iii)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iv)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v) 「기능대학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vi)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2) i)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i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징수규칙 7③)

VIII. 특허료 반환

1. 반환의 대상

1) 특허료는 선납주의(先納主義)에 따라 미리 납부되고, 특허권이 도중에 소멸되더라도(특허권의 포기, 불실시에 의한 취소 등) 이미 납부한 특허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특허법 84 ①본문)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특허법 84①단서)

- i)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이중으로 납부하였거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납부하는 등 잘못 납부된 특허료
- ii)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료 반환의 대상의 경우에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84②)

3. 반환의 청구

특허료 반환은 특허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84③)

제5절 수수료 납부의무

I. 의의

1) 수수료라 함은 특허출원·심사청구(우선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가기관인 특허청장의 특허 등에 관한 공적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도 역시 특허료와 마찬가지로의 규정이 적용된다.(특허법 83, 84)

2) 수수료는 출원·청구·신청시마다 1회에 한하여 납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특허료와 다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납부의무의 법적 성질 역시 특허료 납부의 경우와 같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책무 또는 중간의무이다.

II. 수수료의 종류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각종의 특허수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징수규칙 2, 6)

- i)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등록사항의 경정·변경·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시의 수수료
- ii) 각종 심판청구료,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심판청구서의 보정료, 특허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사본의 교부신청료.
- iii) 기타 각종 서류의 등·초본 교부신청료 및 증명신청료

III.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수수료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특허청장 등은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특허법 46)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장 등은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16①)

IV. 수수료의 반환

1. 반환의 대상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특허법 84①단서)
 - i) 잘못 납부된 수수료
 - ii)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을 제외한다) 후 1월 이내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2. 통지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의 대상의 경우에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84②)

3. 반환의 청구

수수료 반환은 특허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84③)

제6절 특허문헌 제출 의무

- 1)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문헌이나 필요한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특허법 232①II)
- 2) 또한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인의 출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특허법 211) 이에 불응하는 경우 특별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문헌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심사 또는 심판 절차상의 불이익을 지는 데 그친다고 해석된다.

제7절 실시보고의무

I. 의의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특허법 125) 특허발명의 실시보고규정은 국방상 필요 등에 의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경우나 기타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 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수립 등을 점검·반영토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II. 위반 시 제재 여부

구 특허법에서는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특허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보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였으나(구 특허법 232①III), 2006년 개정 특허법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특허권자 등이 특허청장의 실시보고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제8절 특허표시

I. 서설

1. 특허표시의 의의

특허표시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면서 그 물건에 특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법 223)

2. 특허표시의 취지

특허권자 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일반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당해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제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II. 권리규정으로서의 성격

특허표시에 관해서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58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므로 제도의 권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허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는 권리규정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특허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특허표시에 대하여 권리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특허표시가 일반공중보다는 특허권자 등을 위한 것이라는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특허표시의 주체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특허표시를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즉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⁹⁾

IV. 특허표시의 방법

특허표시방법은 특허대상에 따라 크게 물건특허와 방법

특허로 나누어 표시한다. 즉 i)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특허 제○○호)를 물건에 표시하고, ii)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방법특허 제○○호)를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표시한다. i) ii)의 경우에 그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법 223) 다만, 특허된 물건의 요부를 분리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에는 「특허 제○○호 일부」 또는 「방법특허 제○○호 일부」라고 표시하여야 한다.(특시규 121)

V. 특허표시의 효과

특허표시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특허법 130) 나아가 특허표시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 제68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 물건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록특허권의 존재에 대해 악의(惡意)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허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죄에 의한 형사처벌시 객관적 구성요건입증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의 기준이 된다.



9)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의 특허표시가 허위표시에 해당된다(천호남, 553면)는 것은 의문이다. 대상물건이 진정한 특허품인 이상 특허권자 등 이외의 자가 특허표시를 했다라도 그것은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표법상 희석화 보호 방안

손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로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연구소 연구원
 40회 변리사시험 상표법수석합격
 한국특허아카데미 상표법 전임교수
 (현) 태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질문) 甲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내의 대기업으로서 삼성전자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甲이 판매하는 반도체 및 핸드폰, 가전제품 등과 관련하여 그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甲은 상기 관련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년 초에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

乙은 2005년 ‘삼성철거용역’이라는 상호를 인천에서 상호로서 등록을 한 후에, 간판 및 광고 전단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乙은 2008년 10월 상기의 표장을 ‘건물철거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이 乙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상표법은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축적한 신용(goodwill)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침해는 혼동가능성의 야기에 의한 침해와 상표의 판매력을 약화시키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침해로 대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이 희석화에 의한 상표의 침해이며, 이는 상표법의 제2차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2. 희석화의 의미

상표의 희석화란 i) 상표권자의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상표를, ii)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iii) 당사자간의 경쟁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표가 나타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가능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iv)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과 가치를 점차 감소시키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동가능성에 있어서의 쟁점은 특정한 자극에서 발생하는 마음상태가 잘못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임에 반하여, 희석화란 잘못된 오해가 아니라 특정한 상표가 “단일의 출처로부터 생기는 단일한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으로부터

I. 서설

1. 상표법의 목적

그 상표가 “여러 개의 출처에서 생기는 여러 개의 것”을 의미한다는 ‘올바른’ 인식으로 변할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

3. 희석화의 유형

(1)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blurring)

희석이론의 고전적인 또는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제3자가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식별력이 점차 상실되는 경우이다. 혼동에 의한 손해가 즉각적임에 반하여 희석에 의한 손해는 그 상표의 상표력이나 광고력이 점차적으로 파괴되는 일종의 전염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표의 손상에 의한 희석(tarnishing)

손상에 의한 희석은 상표가 가지는 긍정적이거나 양질감을 연상시키는 연관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i) 저명상표를 열등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또는 ii) 저명상표를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II. 갭이 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

1. 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무효심판 가능성

(1) 의의 및 취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이종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저명상표라 하며, 저명상표는 그 상품의 우수

성 때문에 대중의 심리에 양질감 내지 저명감정을 획득하고 있어 그 자체가 상품과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표법은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 유사의 개념을 벗어나 저명상표와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유사 상품에 대한 적용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에 있어서의 혼동은 상표 또는 상품의 면에서 비유사의 영역에까지 미친다. 저명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들이 사용되는 상품 및 영업과 비유사한 영역에 사용될 경우에도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유사상품 사이에 혼동이 일어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저명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양 상품 사이에 저명한 상품 및 영업에 화체된 양질감이 이전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²⁾

(3) 소결

본 호의 규정은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갭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핸드폰, 가전제품”과 을의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철거용역업”은 동종,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혼동가능성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 호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2.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1) 의의 및 취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1)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277면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후183 판결 등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제3자가 출처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하거나, 외국에서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허용함은 상표법의 목적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절의 근거가 없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모방상표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주지도를 제9호에서 제11호의 정도로 낮추었다.

상표제도가 국제화되고 파리협약상의 속지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상표들이 선원주의와 등록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에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해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내 기업 간에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상당히 알려진 상표들이 이종상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선점당하여 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표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익이 있다.

(2) 속지주의의 예외

제9호 내지 제11호는 소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 호는 국내의 수요자는 물론 외국의 수요자간에 인식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국의 수요자는 반드시 복수 국가의 수요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상표 및 상품의 범위

본 호는 국내외의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 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4) 부정한 목적

법문상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예시이며, 원 상표권자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취급된다.

(5) 판단시점

상표법은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만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출원시에 선의였던 것이 출원 후 타인의 상표가 주지, 저명해졌다고 해서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본 호의 규정 또한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는 구법상 본 호의 주지성에 대한 판단시점을 출원 시로 보았다.

(6) 따라서 값은 을이 “삼성철거용역”을 상표로 선정하여 등록을 받으려는 목적이 값의 저명상표인 “삼성”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본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배제할 수 있다.

III. 값이 을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

1. 저명상표의 상표법상 사용금지효의 범위

(1) 서설

일반적으로 저명상표와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3) 상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저명상표는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도 타인의 등록을 배제하는 효력과 마찬가지로 이종상품에까지 미치는가의 문제가 있다.

(2) 학설의 대립

1) 적극설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바,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저명상표는 이종상품간에도 오인·혼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권리범위가 이종상품에까지 미친다고 한다.

2) 소극설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0조에 규정된 독점사용권의 침해 행위와 동법 제66조에서 권리의 침해로 규제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저명상표라 해서 그 권리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1) 일부 판례³⁾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고 하여 적극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2)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서적류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비록 이것이 주지, 저명하더라도 서적류와 비유사한 의류제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지, 저명한 상표권자가 경고장을 보낸 것은 등록상표를 비롯한 상표권자 소유의 도형 및 문자표장이 주지, 저명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또는 저작권 침해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등록상표권의 행사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여 주지, 저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의류업자는 서적류에 대한 주지, 저명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주류적인 판례는 이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취한다.

(4) 소결

상표법은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유사상표와 유사상품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이것은 상표가 형식적으로 근사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유사상품 이외의 상품에는 동일상표를 사용하더라도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유통시장에서 주지, 저명해진 표지와 혼동이 발생하는 행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금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결국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 및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되는 형식적 개념이며, 저명상표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⁶⁾ 따라서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권리범위가 이종상품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정형적, 획일적 보호로는 희석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호

(1)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을 규제할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등
 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5) 상표법 제50조 및 제66조
 6)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275면

수 있는 소위 일반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몇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만을 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유형화하여 보면, i) 특정한 동종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및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가 있고, ii) 동종업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산지허위표시행위와 출처지오인야기행위가 있으며, iii) 동종업자의 개인적인 이익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 내지 공정한 국제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및 대리인 등에 의한 불법적인 상표사용행위가 있다.

(2) 유명상표의 희석화행위⁷⁾

1) 상품주체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이른바 ‘혼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혼동의 개념을 비유사한 상품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명시적으로 유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유명상표의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타인의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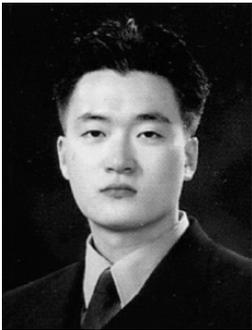
3)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용인 경우에는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i) 비상업적인 사용, ii) 모든 형태의 뉴스 보도 및 논평, iii) 표지가 널리 인식되기 전에 중대한 과실없이 당해 표지가 타인의 것임으로 모르고 사용한 자가 당해 표지가 타인의 것임을 안 후, 자신의 그 표지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이 당해 표지의 권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경우의 사용, iv) 기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에 의한 사용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⁸⁾

4) 따라서 같은 을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해 사용금지가 가능할 것이다.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8) 부정경쟁방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운용 및 문제점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I. 서설

1.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의의 및 취지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심사등록 및 무심사등록을 말하는 데(제2조제3호), 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요건 중 제26조제2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제2조제5호) 이는 유행성이 강한 일부품목에 대하여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디자인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권리화 지연 및 심사 적체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신속한 권리화는 가능하지만 부실권리 양산이 문제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양 제도 간에 기본적인 차이점은 결국 심사범위이다. 심사등록출원은 등록요건 전부를, 무심사등록출원은 등록요건 중 일부를 심사하여 등록된다. 또한 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 1출원주의 원칙하에 심사가 진행이 되고, 무심사등록출원은 예외적으로 복수디자인등록제도를 통해 1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디자인 권의 효력이나 침해시 구제수단 등 디자인권으로서 동일한 행사가 가능하다.

2. 연혁 및 주요 개정법의 내용

1998년 3월 1일 시행법에서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주의 및 무심사주의가 병행되어 운영되게 되었다. 최근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등록요건 전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제3항 참고) 2007년 7월 1일 시행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도 제5조제2항의 창작성 규정을 심사항목에 포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인 경우 거절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26조제2항 참고) 이는 창작성 유무에 대한 판단 중 국내주지형태에 의한 용이창작인지 여부는 선행디자인을 검색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여 이를 심사하더라도 신속한 권리부여라는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이

다. 2008년 1월 1일 시행법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하여 조기에 디자인권의 부여가 요구되는 제조식품 및 기호품(A1류),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추가하였다.(제9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참고)

II.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시 유의사항

1. 출원서 기재 시

제9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제출한다.(제9조제1항) 출원서에는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며(제9조제4항), 이 경우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제5항)

2. 도면 기재 시

도면의 기재방법은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 사이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한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출원별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조의2제1항후단),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제3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출원서류는 반려된다.(시행규칙 제2조)

III. 디자인무심사등록요건의 판단

1.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무심사대상이 되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 중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류 등), C1(침구류 등), F3(사무용지 등), F4(포장지 등), M1(직물류 등)에 속하는 물품 및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이다. 이와 같은 물품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등록출원을 해야 하며,(제9조제6항) 당해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심사등록출원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없지만,

무심사등록출원은 1디자인1출원주의에도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제11조의2)

3.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대상인 심사등록출원과 달리,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 즉,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창작성 중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창작한지 여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유사디자인 제7조, 선출원주의는 거절이유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심사관은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26조제3항) 이는 무심사등록에 의해 부실권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유사디자인에 관한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제26조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를 심사할 수 있다.(제26조제3항)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제11조의2제3항)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제11조의2제4항) 심사기준에 의하면, i) 1개의 기본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ii)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각 이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iii)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1개의 기

본디자인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 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iv)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이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각각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v)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하나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수개의 유사디자인과 별개의 단독디자인을 함께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IV. 무심사등록출원과 관련된 절차 및 제도

1. 출원의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무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심사등록출원을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제18조제4항)

2. 분할출원

심사등록출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아닌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 시에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지만,(제19조제1항제1호 참고)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어도 복수디자인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제19조제1항제2호)

3. 출원공개 여부

종래 심사등록출원인만이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심사·무심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원공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의2제1항) 이는 Web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출원공개가 가능해졌고, 심사·무심사등록출원간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3조의2제1항단서)

4. 비밀디자인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등록출원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의 구분없이 비밀디자인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체에 대하

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3조제1항단서)

5. 등록료 납부 시 포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제31조의2제1항) 다만, 심사등록출원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없다.

V. 효과

1. 흡결 시 효과

(1) 등록요건의 흡결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등록요건 위반 시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심사등록요건 중 제26조제2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의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26조제2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도 거절이유가 된다.(제26조제3항)

(2) 거절이유의 통지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제27조제1항)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27조제2항)

2. 무심사등록의 효과

(1) 디자인권의 발생

무심사등록출원이 등록되면 그 권리의 효력은 심사등록된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동일 또는 유사범위에서 독점배타권을 가지며, 복수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마다 발생한다.(제41조) 한편,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제46조제5항)

(2) 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무심사등록의 부실권리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제29조의2) 다만, 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3) 과실의 추정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5조제2항) 이는 실제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무심사등록을 이용한 탈법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VI.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와 관련된 제문제

1. 중용권의 인정의 문제점

종래 무심사등록을 원칙으로 했던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기술평가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 또는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모른 경우에만 중용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디자인보호법은 무심사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용권 인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입법이 요구된다.

2. 과실의 추정 규정의 문제점

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 제65조제2항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과실의 추정규정(제65조제1항)은 심사등록디자인권자와 무심사등록디자인권자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과실추정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조제2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자 등이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998년 3월 1일 시행법에서 제2항의 신설은 자칫 그 반대해석에 의해 디자인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제65조제2항은 당초의 입법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3.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권리행사의 문제점

무심사등록디자인권자는 정당한 실시자에 대해 부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정당실시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에 무효심판청구 등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디자인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불실시 등의 문제가 생겨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심사등록권리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4. 무심사등록제도의 실익에 대한 의문점

무심사등록제도는 말그대로 무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무심사등록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심사를 절제하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부실권리의 남발 방지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는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5. 무심사등록제도의 폐지론

무심사등록제도를 디자인보호법의 영역에서 분리시키고 창작성 판단을 더욱 강화하여 실제 등록 후 15년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만한 디자인만을 등록시켜 주고, 그밖의 미등록된 다수의 디자인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만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여 규율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도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럽의 등록디자인과 미등록디자인의 2원적 보호규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성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강력히 보호해

주고, 그 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포섭하도록 하는 이원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이다.(국민대 법과대학 한창희, 2008년) 생각건대, 무심사등록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디자인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VII. 결어

무심사등록제도는 디자인의 실질적 보호라는 현실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진일보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사등록제도와 병행함에 있어서 그 취지 및 규정상의 충돌이 예상될 수 있고, 디자인권의 효력 및 선원등록권리자와의 저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심사등록제도는 신속한 권리획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무심사로 인하

여 선의의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디자인보호법은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디자인보호법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제6조 및 제26조제2항) 유사디자인무심사출원에 대하여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제26조제1항제5호)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 및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6조제3항) 2007년 7월 1일 시행법부터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제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따라서, 현행 실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디자인무심사등록요건의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명특허 2009, 8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70

건강하게 삽시다

담배회사의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72

IP Information

아무도 몰랐던 **레고** 발명이야기

「레고」

글·그림
김민재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 돼지가 벽돌집을 지었을때
그것이 벽돌이 아니라 '레고'였다나
뉘대나~



'레고'는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
거의 '예술'수준으로 칭송받는
장난감이다.



이토록 경이롭기 까지 한 장난감 '레고'는
1891년에 태어난 덴마크 출신의 목수 '오울커크
크리스찬센'에 의해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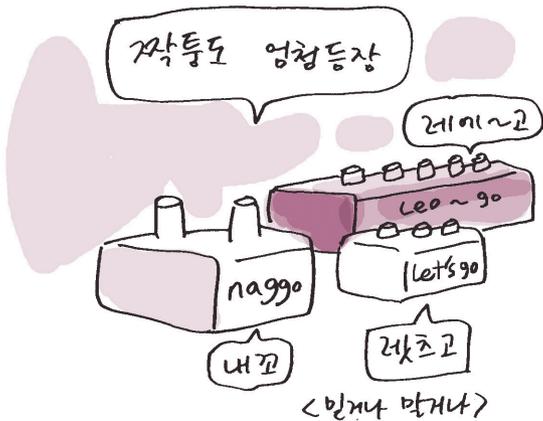
모형집 만들기를 좋아하던
그는 어느새 블록형태의
장난감 만드는 일에
심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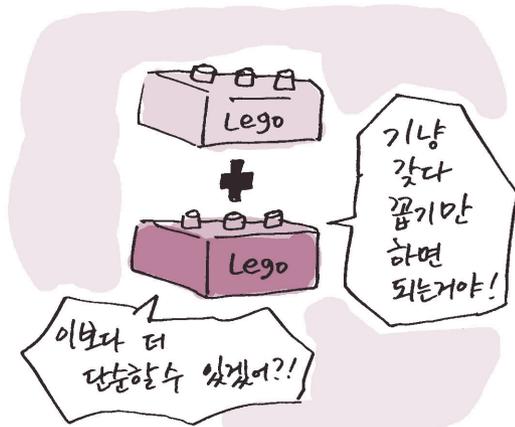
결국 그는 장난감 회사를
차리기까지 하는데 회사이름은
덴마크어로 '재미있게 놀다'라는
의미의 '레고 고드트'를 합성해
'레고'라고 지었다.



이 레고블록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엄청난 수익 판매고를
올렸다.



크리스찬센은 최고 품질의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드디어 1958년
오늘날의 블록 형태의 레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하튼 간에 오늘날에도 그 인기가
식지 않은 레고! 참신한 디자인과
끊임없는 연구로 그 인기가 유지
되는것 아닐까?



담배회사의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조형오

담배회사에서 전개하는 후원활동이 만약 공중의 흡연에 대한 인식 및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 등 흡연환경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담배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담배회사의 후원활동도 담배에 대한 판촉 및 마케팅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캐나다는 담배회사 판촉 후원 활동에 강력한 대처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흡연의 건강위해성이 각종 소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시점에도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에 대해 완전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와 담배회사간의 '협정'의 형태로 사안에 따라 제한과 허용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 12월 발행된 정부백서인 'Smoking Kills'에서 영국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98/43/EC)에 따라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그 결과 제정되어진 법률이 담배광고와 판매촉진에 관한 법률(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Bill)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월 보건부장관은 담배광고와 판매촉진행위, 후원행위 금지 등의 조치는 영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2.5% 감소시켜서 매년 3,000여 명 이상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서, 담배회사의 스포츠 및 각종 예술·문화 행사에 대한 후원활동에 대해서도 역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적인 3대 스포츠 이벤트의 하나로까지 알려져 있는 F1(Formular 1) 행사에 대해 캐나다는 담배회사의 광고를 금지시킴으로

써 행사 자체를 취소해 버린 경우도 있었다.

호주 연방정부는 1992년에 호주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대하여 담배회사의 후원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담배회사의 후원을 금지하는 법령은 거대 담배회사 및 이들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던 일부 언론, 미디어,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호주 스포츠는 후원금이 시행된 이후 후원금의 조성과 수입 증대 측면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공헌활동이란 명칭으로 후원활동 난무

우리나라의 담배회사에서는 지속적인 담배회사의 후원활동이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KT&G의 경우 은퇴주민, 대학생동아리 등 사회네트워크의 구성을 하여, KT&G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KT&G가 공동으로 모금하는 형식을 갖추어 일반사회와 담배회사인 KT&G가 함께 사회후원활동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기업의 이미지가 일반인에게 오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행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청소년이 주 대상인 복지활동과 스포츠단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여자배드민턴단과 여자배구단을 소유하여 여성이 주 대상인 스포츠 단을 소유하는 등 KT&G의 후원활동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BAT의 경우는 KT&G 보다는 사회후원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활동도 담배회사와 회사직원, 담배소매점으로 제한하였다. 봉사단체를 회사직원과 소매점으로 제한하고, 문화후원행사인 경우는 담배회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한 것은 현행 후원금지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례 많아

필립모리스에서도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FCTC(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국적 담배회사 전략의 핵심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담배회사의 명예를 개선시켜서 그들이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만들고 이로써 효과적인 담배통제정책의 수행을 방해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담배회사 로고를 사용한 후원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나, 청소년과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대상 교육복지활동이 진행되었고, 청소년과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 단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이 모호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허용된 후원활동에 대하여도 일반광고와 같이 담배회사의 로고와 같이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하는 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스포츠 마케팅 활동, 기업에 호의적으로 인식 변화

담배회사의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공중의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 흡연에 대한 인지적, 태도적 차원, 그리고 금연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2007. KT&G프로농구 경기 관람객 334명 대상) 첫째, KT&G 농구팀에 대한 태도는 경기를 관람한 직후가 관람 전보다 더 호의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값=4.39, 사후 값=5.37, 유의도 <.01) 둘째, KT&G 기업에 대한 태도는 농구팀에 대한 태도만큼 현저하게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관람 전보다 경기 관람 후 더 호의적으로 변화하였다.(사전 값=4.52, 사후 값=4.65, 유의도 <.0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담배회사가 기업의 모습을 가장하여 담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와 여론을 형성하

려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다양한 기업 형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 견제·고발 노력 지속해야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담배회사의 스포츠, 문화행사, 복지사업지원 등의 후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담배의 직간접광고, 후원의 완전금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담배회사가 후원하던 행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담배회사의 비윤리성과 기만성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의 광고 및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발한 광고 교육활동은 담배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담배회사의 마케팅 활동은 금연 캠페인의 노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연캠페인을 통하여 담배회사의 비윤리적 마케팅 활동을 견제하고 고발하는 노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발명특허 2009, 8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해외특허분쟁	76
즐거운 퍼즐	84
문화산책	87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88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89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91

일본 특허정보 제공 분야의 명문 기업인 파토리스 경영난으로 업계에 충격

일 본의 특허정보 제공 회사인 파토리스(Patolis)사가 지난 7월 17일, 민사 재생 절차의 실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토리스사는 1978년에 일본 최초로 (재)일본특허정보기구(JAPIO)가 서비스를 시작한 특허정보 온라인 검색 시스템 「PATOLIS」를 계승하여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것이다. 도쿄의 한 지식재산 정보 회사 대표는 「예전부터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최장기간 지속되어 온 서비스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다. 지식재산 업계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설립 초기에는 일본 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의 전신) OB로 샤프의 부사장, JAPIO 이사장직을 거쳐 온 와다 유타카(和田裕)씨가 경영을 계속해 왔지만 수년 전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한 바 있다. 그 후 이 회사는 자본 감소를 실시하고 도시바 등의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카네로 스미오(加根魯澄夫) 신임 사장이 경영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2008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부채액이 많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영 지원처로 소프트뱅크 계열사 등이 거론되고 있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은 외자계 기업과 절충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 www.business-i.net

인도, 2008 ~ 2009년 특허 건수 18,230건으로 증가

인 도 국회의 하원은 인도 특허청이 2008-2009년도에 18,230건의 신규 특허를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통상산업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Commerce and Industry)인 Jyotiraditya Scindia는 하원의 서면 답변에서 “인도 특허청은 지난 3년간 다양한 특허 출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2008-09년 36,877건의 출원물 중 18,230건이 특허를 승인 받았다. 2007~2008년도 특허청은 35,218건의 출원을 받아 15,261건을 승인하였다.

특허 심사관의 증가와 기존 특허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 Scindia는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의 현대화와 강화를 실시하도록 승인하였다.”고 언급하며, 해당 계획에서 특허, 디자인 심사관의 확충, 특허청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인도 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의 두드러진 요소로는 기반시설 마련과 인력 확충, 전산화, 인식 제고 등이 있다.

자료출처 : www.business-standard.com

일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참여하는 신규 민간 조직 잇달아 설립

세 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민간 지식재산 전략 지원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무소를 대상으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코스모테크 특허정보 시스템은 지난 7월 21일, 도쿄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추진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기술사, 중소기업 진단사, 공인회계사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에 변리사를 포함하여 전문가 제휴조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족식에는 각 사업 단체 간부 등 250명이 참가했다.

코스모테크사의 경영 간부에 따르면 「전문가의 힘을 결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상황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례회 참가자나 전국의 공공지원기관 등에서 활용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나아가 툴 측면에서도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기술사회는 이번에 「지식재산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 전략, 기술 경영, 지적 자산 경영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기계, 전기·전자, 화학, 금속, 환경, 정보, 식품, 의료·바이오 등 각 분야의 기술사들이 업종의 벽을 넘어 변리사, 세무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약 30명의 참가자가 있지만,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기술사회의 쿠보 야스히로(久保康弘) 이사는 「우선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명도를 높이고 싶다.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LLC(유한책임회사)나 NPO(민간 비영리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최근 새로운 조직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싱가포르의 한 지식재산 변호사는 「중국 정부의 경우 저비용 생산이라는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노베이션과 창조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다. 지식재산 전략이 곧 특허 출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종합적인 관점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의 상태를 진단받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소기업은 고문으로 계약하는 전문가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경영상의 모든 상담을 한 번에 끝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종합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노하우 개발 및 실천적 연구도 중요하고 상담료의 징수, 분배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중국 판권보호센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증가율 사상 최고

중국 판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 15일, 2009년 상반기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전체 등록건수는 29,934건에 달했는데 그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 건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성장폭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국이 2009년에 접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 건수는 29,804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13,999건에 비해 112%가 증가한 결과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28,748건으로 나타나, 동기 대비 100% 증가되었다.

소프트웨어 등록자의 소재지별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가 많았던 성·자치구·직할시는 상위권부터 순서대로 베이징시, 광둥성, 쑤저우성, 상하이시, 장쑤성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폭이 컸던 곳은 북경시, 광둥성, 쑤저우성, 장쑤성, 푸젠성, 쓰촨성, 텐진시, 후베이성으로 성장 폭은 각각 28% 이상이었다. 그 중에 베이징시의 등록 건수는 중국 전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쑤저우성도 2008년 5위에서 2009년 3위로 크게 도약하였다. 한편, 가장 성장 폭이 큰 것은 텐진으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하였다.

자료출처 : j.people.com.cn



의류 디자인 보호에 대한 업계 이견

저 작권 보호를 의류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디자인도용금지법(DPPA)으로 인하여 미국 패션업계의 불화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Michelle Obama가 선호하는 의류인 Zero + Maria Cornejo를 운영하는 Maria Cornejo는 DPPA에 의하여 자신의 의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Michelle Obama의 취임식 의상을 제작한 Isabel Toledo는 DPPA가 패션 및 의류업계의 불화를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처리 중인 DPPA는 작품을 도용하는 기업들로부터 독립 디자이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디자이너들은 등록비를 내고 디자인을 등록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패션에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적용하는 유럽과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의류 디자인 등록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25년이다.

Smart & Biggar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Daniel S. Drapeau는 미국의 법령은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Drapeau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자의 사망 후 50년까지이며, 50개 이하의 디자인을 만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 최대 규모의 두 패션 협회는 본 법안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임으로써 업계가 편이 나뉘고 있다. 가입 초창을 통해서만 회원을 모집하는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는 DPPA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위조품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점과 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위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Cornejo의 경우에는 DPPA가 디자이너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는 이에 반대하였다. 예컨대 Toledo는 디자이너의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 소송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션의 유행 독점을 야기하여 좋은 디자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canada.com

베이징(北京) 국제판권센터 등이 건립한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공간」이 정식으로 가동

베이징(北京) 국제판권센터와 중화(中华)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공동으로 건립한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공간」이 정식으로 가동되어 “창의보험상자”를 선보였다.

베이징 국제판권센터의 이사 리형(李衡)은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공간은 앞으로 전국 84곳의 법률사무소, 400여명 전문 권익보호 변호사 등을 바탕으로 판권登記, 디지털판권 보호 기술, 권익보호행정 불편 접수 신고고발, 증거수집 조사, 권익보호 소송 등 법률자문과 판권권익 분야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건설에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중화법률협회 지식재산권위원회 리더청(李德成)은 “창의보험상자”에 대해 「창의보험상자를 간단히 말하면, 타인이 창의상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최단시간, 최저자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품임을 알리는 제도이다」라고 소개하고 등록과 사용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창의보험상자”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보험상자”는 인터넷 전자공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창의권리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증거보존, 기업 상업기밀보호, 디지털저작권보호, 디지털작품 판권登記 등의 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네트워크 내용·신분 식별코드 국제표준 발표

최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중국표준 음악작품 코드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등 4개 네트워크의 내용·신분 식별코드 국제표준을 비준하여 발표했다. 이 4개 항목의 표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실사가 되면 중국의 영상, 음악, 문학작품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표준코드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4개 표준은 「중국표준 시청각 작품호 제1부분; 시청각 작품표지부 (ISAN-1)」, 「중국표준 시청각 작품호 제2부분; 판권부호부 (ISAN-2)」, 「중국표준 원문코드 (ISTC)」, 「중국표준 음악작품 코드 (ISWC)」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와 베이징 창위엔(创源) 코드연구원은 이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하였고 테스트를 거치는 등 각 항목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작품이 코드를 취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든 권리자들의 기술수단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코드는 문화, 영상전파, 뉴스출판 등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일반 대중들 또한 신분식별, 정보관리, 정보검색, 정보교환과 관련된 기술 보증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이 4개의 국가표준은 문화부 문화시장발전센터, 중국표준화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제출하여, 베이징 대학(北京大学), 칭화대학(清华大学),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국가도서관(国家图书馆), 베이징창위엔코드연구원(北京创源编码研究院),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신기술·판권부호위원회(新技术与版权保护委员会) 등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자료출처 : www.cipnews.com.cn

USPTO 전자특허처리 진일보

미 국 특허청(USPTO)은 지난 7월 21일, e-Office Action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 출원자는 우편이 아닌 전자메일로 통지를 받게 됐다. 전자 장비를 통해 자신의 출원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특허출원 정보 시스템인 Private PAIR에서 새로운 통신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게 되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자메일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무부의 지식재산권 차관보이자 USPTO의 임시 청장인 John Do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원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문서 작성 비용과 우편 비용을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 속도를 향상시켜 출원자들이 특허청의 조치에 대한 답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Office Action 프로그램의 대상과 참여

- 이 프로그램은 실용신안, 디자인, 국가 단계의 출원 재발급 등을 포함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식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모두 포함함. 국제 출원과 재심사, 조정 절차는 본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음
-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모든 변리사나 기록 대리인, 개인 발명가들이 고객 번호에 연관된 특허 출원 시에 이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또한 어느 때나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고 우편을 통해 통신을 수령할 수 있음

e-Office Action 프로그램 참여와 훈련, 기타 프로그램 정보는 www.uspto.gov/ea에서 얻을 수 있다. e-Office Action에 대한 질문과 제언은 Patent Electronic Business Center (EBC)의 고객센터 센터 866-217-9197 (무료)나 571-272-4100, ebc@uspto.gov로 연락

자료출처 : www.uspto.gov

일본 후마킬라, 아스제약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

일 본의 살충제 제조회사인 후마킬라(Fumakilla Co., Ltd.)는 같은 업종의 아스제약이 2009년 3월에 발매한 휴대용 해충 퇴치기가 자사의 제품과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제조·판매의 금지를 요구하면서 도쿄지방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다.

후마킬라에 의하면, 아스제약의 「밖에서 노매트 V130」는 살충 성분을 발산하는 장치에 벨트를 붙이고 손목시계와 같이 감는 형태로, 후마킬라의 「어디서나 베이프 NO.1 NEO」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후마킬라의 제품은 2006년 2월에 발매되었다. 아스제약 홍보실 측에서는 「유사하다거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아스제약이 살충 성분을 상하 방향으로 분출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도쿄지방법원에 후마킬라를 제소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분쟁 중이다. 그러나 후마킬라는 이번 제기 대해 「(아스제약이 제소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fumakilla.co.jp

광저우(广州) · 홍콩 지식재산권보호합작 전문책임팀,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능력 향상에 관한 논의

광 저우 · 홍콩 지식재산권보호합작 전문책임팀의 제8차 회의가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정품승낙(正版正货承诺) 활동을 벌이는 지역을 광동 8개 지역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실무양성에 대해 결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광둥성 지식재산권국 국장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광둥과 홍콩 두 지역의 지식재산권 합작은 기업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광둥성에서 「지식재산권과 중소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광둥, 홍콩, 마카오 지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 기업이 특허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콩 지식재산권서장 시에수광(谢肃方)은 “광둥과 홍콩이 계획한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는 2009년 말 「특허법 개정과 실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도부를 초청하여 상업계 종사자에 대해 새로 개정된 「특허법」에 대해 해설을 서비스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시킬 것이다. 또한 광저우에서 광저우 · 홍콩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 양성반을 꾸리고 기업이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홍콩자산기업의 특허정보이용을 가속화 시킬 업그레이드 양성반을 광저우에서 설립하고, 두 개 지역 지식재산권법에 최신 과학기술을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자료출처 : www.ipr.gov.cn

칭다오(靑島) 지식산권국, 2009 중국 국제 소비 전자 박람회에서 지식재산 권에 관한 보호업무 전개

최 근 2009년 중국 국제 소비 전자 박람회가 칭다오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500곳의 유명한 전자 기업이 전시에 참여한다. 칭다오시 지식산권국은 시공상국, 시판권국, 칭다오세관, 라오산구(嶗山区) 지식산권국 등의 부서와 연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팀을 꾸려 박람회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하고 참여기업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전개하여 칭다오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였다.

박람회 기간에 지식재산권 보호업무팀은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자문과 불만접수 등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전개한다. 50여 차례의 순회조사를 통해 만 건에 달하는 상품 조사, 특허표지 20여건 등록, 특허침해 분쟁 1건 처리, 특허행위 사칭 3건 개정명령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팀 위원회와 박람회 참여기업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중국의 기회를 누리다(全球共享中国机会)”를 주제로 전 세계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전자영역의 최신기술, 상품, 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전시를 실시하였다. 박람회에는 1509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었고 박람회 면적은 40000평방미터, 부스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람회의 주요내용은 신기술, 특허 상품 등이 주로 포함되었고 이들은 모두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박람회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높은 요구를 반영하였다.

자료출처 : www.sipo.gov.cn

미국 무역대표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무역 상대국의 감시 강화에 따라 무역 분쟁 가능성 높아져

미 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론 커크(Ron Kirk)는 지난 7월 16일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통상 정책의 기본방침을 표명했다. 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의 노동·안전 기준 등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법(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시정을 강요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국내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오바마 정권의 방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과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커크 대표는 「(무역 상대국이 국제협정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상대국이 마련한 비관세 장벽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국무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국내 기업이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이 거액의 무역적자를 계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초점이다. 커크 대표는 광물 수출의 제한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월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점을 언급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라고 강하게 언급하면서 중국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자료출처 : www.nikkei.co.jp

제공 R&D 특허센터 홈페이지
(www.ipr-guide.org)

PUZZLE

함께 풀어봅시다

1	2		4		5	
	3					
8					6	7
9	10			13		
			12			
11					15	
			14			

가로열쇠

1. 일년 내내 물이 흐르는 하천. 분류하천.
3. 한복 윗옷의 하나. 길, 소매, 설, 깃, 동정, 고름, 끝동, 회장 따위가 갖추어져 있다. 겹○○○와 핫○○○가 있다.
4. 필요에 따라 대중 매체의 보도를 관리하면서 통제하는 일.
6. 해안이나 사막에서 바람에 의하여 운반·퇴적되어 이루어진 모래 언덕.
9. 중국 삼국 시대에 관우가 댄었다는 준마의 이름. 매우 빠른 말을 이르는 말.
11. 일정한 지역의 단위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 보통 1Km² 안의 인구수로 나타낸다.
12. 사무소나 연구소 따위와 같이 이름이 '소(所)' 자로 끝나는 기관을 세워 처음으로 일을 시작함. 또는 그런 기관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함.
14. 1776년에 영국의 스미스(Smith, A)가 쓴 경제학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나라의 부(富)를 증대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자유방임경제를 주장하였다. 최초로 자본주의 사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고전경제학 이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다.
15. 서로 갈리고 바뀜. 또는 서로 바꿈.

7월 호 즐거운 퍼즐 정답

발	품		이	습	우	화
	사	고	무		각	
갑			기		호	서
골	전	도		상		도
	화		미	궁		민
하	위	문	화		대	요
	복		법	제	처	

즐거운 퍼즐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시오.

세로열쇠

2. 지구표면의 관측지점에서 연직선을 아래쪽으로 연장했을 때 천구(天球)와 만나는 점
4. 슈베르트가 작곡한 가곡. <겨울 나그네> 가운데 제5곡으로 독립적으로도 흔히 불려진다.
5.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7.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조직한 사회단체.
8. 말을 타고 떼를 지어 다니는 도둑. 주로 청나라 말기에 만주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10.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12.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제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이에 속하며 과거에는 후진국이라 불렀다.
13. 웃음을 머금음. 꽃이 피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2009년 8월
 발명특허
 기사
 2009년 8월

월간 **발명특허**
 2009. 8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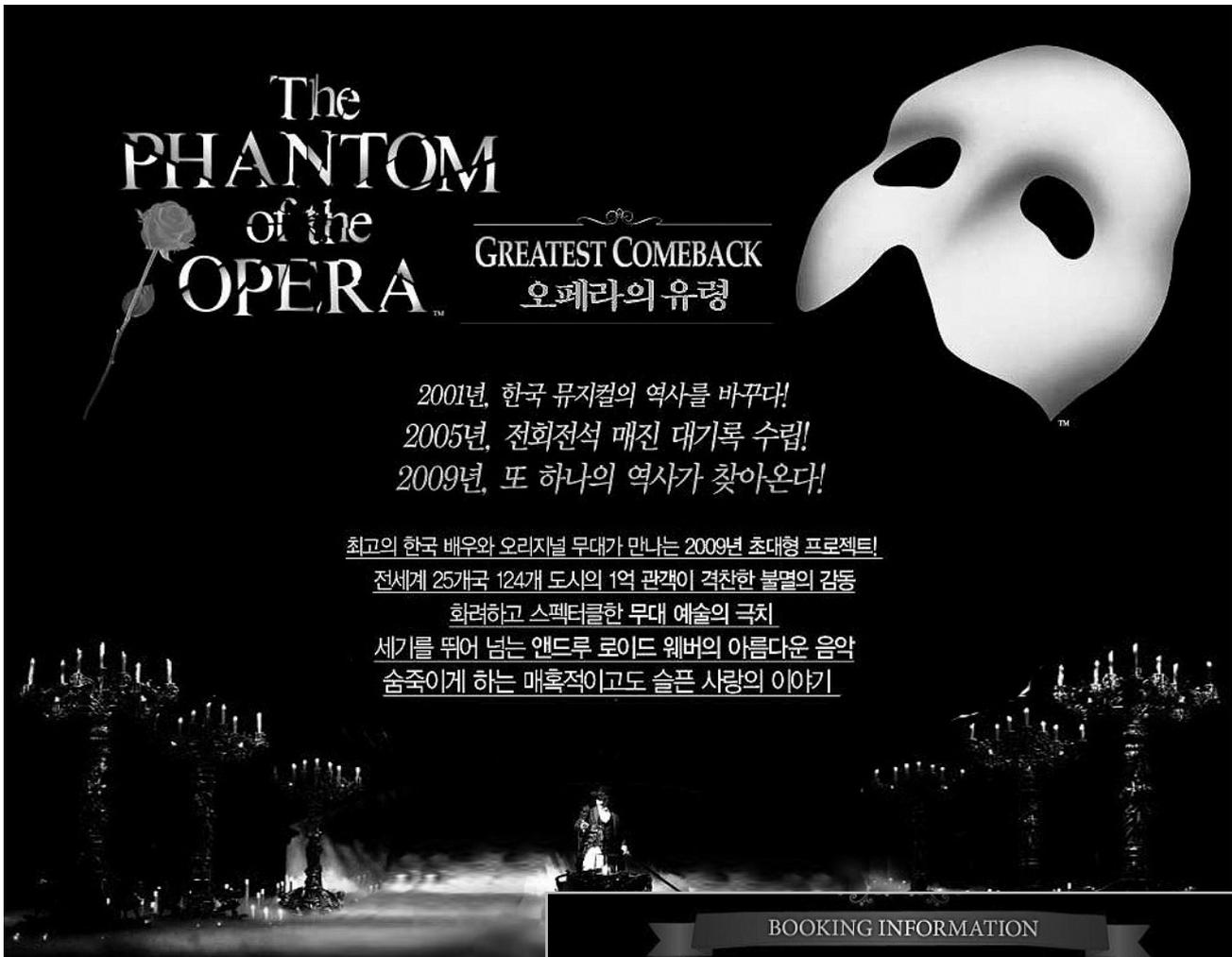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8월호 퍼즐정답

1	2	■	4		5	
■	3			■		■
3		■			6	7
9	10		■	13	■	
■		■	12		■	
11				■	15	
■		■	14			





The PHANTOM of the OPERA

GREATEST COMEBACK
오페라의 유령

2001년, 한국 뮤지컬의 역사를 바꾸다!
2005년, 전회전석 매진 대기록 수립!
2009년, 또 하나의 역사가 찾아온다!

최고의 한국 배우와 오리지널 무대가 만나는 2009년 초대형 프로젝트!
전세계 25개국 124개 도시의 1억 관객이 격찬한 불멸의 감동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무대 예술의 극치
세기를 뛰어 넘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
숨죽이게 하는 매혹적이고도 슬픈 사랑의 이야기

세기를 뛰어넘어 종연을 예측할 수 없는 뮤지컬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마법 같은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은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 연출가 해럴드 프린스 등 세기를 뛰어 넘는 거장의 손을 거친 전세계 뮤지컬 역사에서 다시는 탄생할 수 없을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전세계 25개국 124개 도시에서 6만 5천여 회 공연되었으며 관람객만도 1억 명이 넘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동시에 최장기 공연 기록을 수립할 유일한 작품으로 종연되는 순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뮤지컬입니다.

무대 예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 극치

'오페라의 유령'은 시대를 고증하는 화려한 의상, 특수효과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 잡고 있습니다. 130여 명에 이르는 배우와 스태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230여 벌의 화려한 의상이 실재 없이 무대를 뒤덮고 20만 개의 유리구슬로 치장한 1톤의 상들리에,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대와 음침한 지하세계 등 수준높은 무대예술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최고의 한국캐스트가 빛어낼 벽찬 감동

주옥같은 멜로디와 드라마틱한 감동의 러브스토리를 어느 나라에서 공연하여도 항상 동일한 최고 수준의 퀄리티로 표현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의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철저한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된 최상의 한국배우들이 함께 만들어 낸 이번 무대는 8년을 기다려온 한국 관객들을 감동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BOOKING INFORMATION

1차 예매 오픈 기간 9월23일 ~ 10월 31일

공연장소 사투데씨어터

공연시간 평일 8시 / 토요일 3시, 8시 / 일요일 2시, 7시
* 월요일 공연 없음, 추석연휴 10/2(금)-10/3(토) 2시, 7시 2회 공연
10/4(일) 3시 1회 공연

캐스트 윤영석, 김소현, 양준모, 최현주, 홍광호, 정상윤, 김봉환, 서영주, 윤이나, 최주희, 진용국, 정영주, 정단영 외

제작 SBOL & COMPANY Entertainment CHARLOTTE RUDY
제작투자 IS PLUS
주관 CLIP service
협찬 비씨카드 LOUNGE KQJb
후원 NAVER
공연문의 02)501-7888
홈페이지 <http://www.phantomoftheopera.co.kr/>

		9-10월 티켓 가격	
		Weekend 황금 저녁 / 일 저녁공연	Weekend 브라운관 및 저녁 / 일 낮공연
VIP	120,000	130,000	
R	100,000	110,000	
S	70,000	80,000	
A	50,000	50,000	
B	40,000	40,000	

* '오페라의 유령'은 월별로 티켓가격이 변동하는 '티켓가 시계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티켓가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09 직무성과계약체결

우리회 비전 및 전력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다져



우 리회는 지난 6월 26일, 전사(상근부회장↔본부장) 및 단위조직(본부장↔팀장) 간의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비전 및 전력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성과계약은 목표면담을 통해 단위 조직별로 성과 목표를 도출하여, 구성원들에게 성과책임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한 계기가 되었다.

올해도 역시, 비전 및 전사적 전략방향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목표를 설정·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급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만 지식재산 교육 아카데미 및 대만 특허청 방문단, 우리회 방문



대 만 지식재산 교육 아카데미(TIPA, Taiwan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Academy) 및 대만 특허청 방문단이 지난 7월 6일, 우리회를 방문하였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주요 사업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특히 대만방문단은 우리회의 활발한 지재권 교육 활동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과 대만의 지재권 교육 발전을 위한 KIPA 및 TIPA의 밀접한 협력 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특허기회 확대되고, 녹색기술심사 빨라진다

우수발명의 특허획득 기회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지난 7월 1일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개정 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하고,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 개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월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의 특허정보 관리, 편리해진다.

특허청, 사용자 맞춤형 특허정보 관리포털 제공

앞으로는 특허출원 이후의 진행정보나 등록정보, 심판정보 등 개인의 모든 지재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그간 온라인 출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특허로 웹사이트(www.kiporo.go.kr)를 지난 5월부터 특허정보 관리포털(가칭 '특허로 2.0')로 확대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오는 12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출원건수가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대기업이나 특허법률사무소는 자체적인 특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특허관리 S/W를 구입하여 특허관리 등에 활용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개인출원인이나 중소기업 등은 특허로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특허정보 조회에만 의존하여, 마감기한이 있는 서식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 등 전반적인 지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확대 구축될 특허로 2.0은 이러한 다양한 여건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맞춤형 특허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다.

제공 특허청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 회 원 명 : (주)메이즈텍
- 대 표 자 : 이병성 대표이사
- 업태/종목 : 제조 / 서비스
- 가입년월일 : 2009년 6월 29일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7-50 인천국방벤처센터 202B
- 전화번호 : 032)260-2020
- 홈페이지주소 : www.maze.kr



- 회 원 명 : 구들장 벽난로
- 대 표 자 : 최상홍 대표이사
- 업태/종목 : 제조업
- 가입년월일 : 2009년 7월 24일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연봉리 320-1
- 전화번호 : 033)435-9822
- 홈페이지주소 : www.gudfire.com

- 회 원 명 : 우신NTI(주)
- 대 표 자 : 이가연 대표이사
- 업태/종목 : 제조업
- 가입년월일 : 2009년 7월 31일
- 주 소 : 서울 송파구 방이동 47-11 이레로빌딩 5층
- 전화번호 : 02)577-9720
- 홈페이지주소 : www.wsnti.co.kr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제한없음
- 모집시기: 수시
- 보내실곳: E-mail - eldaah7@kipa.org

회원사 동정 접수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원고분량: A4(1/2매)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고객지원팀 TEL (02)3459-2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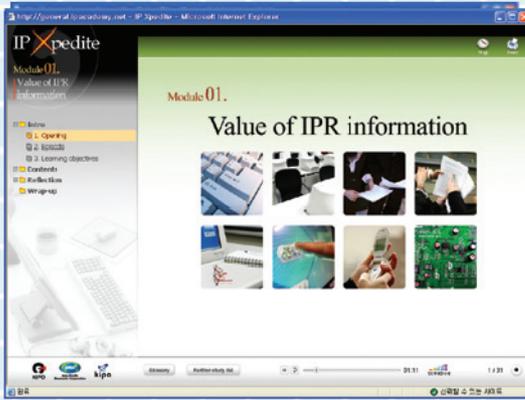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명훈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대전지회	이상복	박병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 2층 (대전한일병원 근처)	042-638-4307
강원지회	차명진	송상엽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편집 : 고객지원팀 김민국 (Tel, 02-3459-2868, Fax, 02-3459-2879)



■ 학습대상

지재권 정보의 기초 개념 및 그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재권 기초 개념을 습득한 자로서 지재권 학습의 다음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자

■ 강의소개

본 콘텐츠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정보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모듈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다양한 시연을 통해 지재권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학습목표

국제적 관점의 지재권 정보에 관한 가치, 검색방법, 분석방법 및 특허정보의 해석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수강방법

1. <http://general.ipacademy.net> ▶ 2. 로그인(회원가입)
- ▶ 3. 교육과정중 일반정규과정 선택 ▶ 4. 수강신청
- ▶ 5. 나의강의실에서 학습



황금 나비상

2005/06/07/08/09 KSA한국표준협회

소비자웰빙지수 5년 연속 1위

無방부제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

"2007,08 편익점협회 음료전체매출 2년연속 1위"

여명808은 음주전후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세계 11개국 발명특허품입니다.



세계 발명왕
상강원

발명특허품
숙취
해소
천연차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Korea
Master Brand AWARDS 2009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경제신문·중앙일보 공평
조사·평가 브랜드스톡
2009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자매품



LOHAS 인증을 확인하세요

스태미나중진용 천연차 **다미나909**
세계 10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 명예경영학박사, 보건학박사,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세계 10대 발명진 석권, 400건이 넘는 산업재산권 보유.



http://www.glami.com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익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